2021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

2021. 3.

통계청
Statistics Korea

목 차

Ⅰ. 개 요 ····· 1

1. 2021년도 자체평가 기본운영 방향 ····· 1
2. 세부 운영방향(개선사항 위주) ····· 1
3. 수립경과 ····· 3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 5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5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6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8

Ⅲ. 자체평가 대상 ····· 10

1. 주요정책과제 ····· 10
2. 통합재정사업 ····· 19
3. 행정관리역량 ····· 20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22

1. 주요정책과제 ····· 22
2. 통합재정사업 ····· 36
3. 행정관리역량 ····· 42

Ⅴ. 자체평가 방법 ····· 71

1. 자체평가 방법 ····· 71
2. 자체평가 일정 ····· 77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 78

1. 기본원칙 ····· 78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 계획 ····· 79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80
4. 평가결과 공유 · 확산 방안 ····· 81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81

<참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가중치 현황 ····· 82

Ⅰ 개 요

1 2021년도 평가 기본운영 방향

목표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업무 개선 및 효율성 제고		
기본 방향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성·안정성 강화	내부조직구성원 의견 반영	평가결과 환류 강화 및 정책 성과 창출
세부 운영 방향	- 자평위원 임기보장 -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이해도 제고	- 조직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일정, 평가지표 변경 등 평가 내실화	-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정책 성과 창출

2 2021년도 자체평가 세부 운영방향

< 자체평가의 개념>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46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란 각 사업부서에서 그 해 각 부서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수립한 후 이를 평가지표별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이 **추진된 결과가 상위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나를 평가하는 시스템임
- 더불어 평가의 기본 토대는 **각 부서에서 작성해 온 보고서가 기준**

1.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성 · 안정성 제고

○ **(자평위 안정성) 코로나19상황 지속됨에 따라 자체평가의 일관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1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분과위, 담당과제 등) 유지*

* 자체평가위원의 임기(~'23.3월) 보장

○ **(자평위 전문성)** 자평위원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관리과제 매칭으로 **원인분석 및 정책제언의 실효성 확보**

2. 자체평가위원 정책 이해도 제고

○ **(실적 점검 및 컨설팅)** 분과위별 **청 주요사업**의 정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컨설팅

○ **(연말 사업성과 보고회)**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연말 평가 중 사업성과 보고회**를 실시하고 **주요성과 설명시간 확대**

3. 조직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 개선

○ **(평가일정 변경)** 상반기(계획), 하반기(집행, 성과) 평가를 하반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추진실적 분량 조정)** 조직구성원 의견 수렴에 따라 추진실적 25페이지 작성을 지표당 1~2페이지로 조정

* 단, 배점이 큰 정책효과성은 3페이지 작성 가능

○ **(평가등급 명칭 변경)** 매우우수~부진(7등급)을 가~사(7등급)으로 평가등급 명칭 변경

○ **(평가지표 변경)** 조직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변경안 마련

2020년			2021년		증감
집행 (20)	추진일정의 충실성(3)	→	집행 (20)	추진일정의 충실성(5)	**+2**
	현장의견 정책개선 노력도(7)			정책개선 및 정책 협업 노력도(15)	**△2**
	관련기관.정책과 협업 노력도(10)				
효과 (30)	정책 효과성(25)		**효과 (30)**	정책 효과성(30)	**+5**
	우수사례(5)			(지표삭제) ~~우수사례(10)~~	**△5**

4.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 **(정책·인사 환류강화) 평가결과**를 **정책·인사** 등에 적극 **반영**

– 전년도 평가결과 **다소미흡 이하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1차) 전체 자평위원이 관리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2차) 성과관리 T/F 위원의 총괄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방안 제시

– 5급이상 **성과연봉** 및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기초자료 활용**

– 자체평가(재정사업) 미흡사항에 대한 환류(개선방안 마련)

○ **(우수성과 인증제)** 자체평가 결과, **3년연속 '우수이상'** 과제는 익년도 **1회 평가 면제** 또는 **자체평가 선택 가능**(해당부서 판단)

– 단, 평가 면제라도 성과관리 이행상황 점검 등 성과관리는 실시

– 해당과제 선정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 3년 연속 우수과제 선정 시, 차년도 BSC 반영은 전년도 평가점수를 반영

5.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정책 성과 창출

○ **(체계적 성과관리 모니터링) 성과관리 이행 점검**을 통해 과제달성도, 추진계획 이행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장 주도**하에 **부진과제 개선대책 마련** 등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 **(TF 구성 통한 집중컨설팅)** 평가경험이 많고 정책이해도가 높은 '자체평가 위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성과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3 수립경과

○ '2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개선을 위한 감담회 실시 : 2.22

○ '21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안) 부서 및 위원 사전검토 : 3.5.~3.25.

○ '21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안) 위원회 심의·의결 : 3.26.

○ '21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청·차장 보고 및 국조실 제출 : ~ 3.31.

< 붙임 > 전년대비 평가지표 변경 현황

2020년 (103점)		2021년 (103점)		증감
계획 (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5)**	**계획 (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5)**	-
	2. 계획수립의 적절성(5)		2. 계획수립의 적절성(5)	-
	3. 환류의 충실성(5)		3. 환류의 충실성(5)	-
	4. 과제수행 난이도(5)		4. 과제수행 난이도(5)	-
집행 (20)	5. 추진일정의 충실성(3)	집행 (20)	5. 추진일정의 충실성(10)	**+7**
	6. 현장의견 정책개선 노력도(7)		6. 현장의견 정책개선 및 관련 기관 정책 협업 노력도(10)	**△7**
	7. 관련기관.정책과 협업 노력도(10)			
성과 (30)	8. 관리과제 성과달성도(20)	**성과 (30)**	7. 관리과제 성과달성도(20)	-
	9. 성과목표 성과달성도(10)		8. 성과목표 성과달성도(10)	-
효과 (30)	10. 정책 효과성(25)	**효과 (30)**	9. 정책 효과성(30)	**+5**
	11. 우수사례(5)		<삭제> 우수사례	**△5**
가점 (3)	**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	**가점 (3)**	**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	-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0.5) 및 성과업무 교육참석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0.5)
ⓑ 국정과제, 특정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과제(성과지표) 선정(1.0이내)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1.0이내)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0.5) 및 성과업무 교육참석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0.5)
ⓑ 국정과제, 특정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과제(성과지표) 선정(1.0이내)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1.0이내)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총 17명, 내부위원 1명 포함)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분야	비고
외부	전주상	한성대학교	교수	행정학	**위원장**
	원구환	한남대학교	교수	행정학	
	여인권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통계학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복지	
	심광호	고려대학교	교수	정책학	
	김승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경제학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행정학	
	오영민	동국대학교	교수	행정학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경제학	
	이상인	충남대학교	교수	통계학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김병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실장	행정학	
	권미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경제학	
	이규철	충남대학교	교수	컴퓨터공학	
	김홍규	임팩트 컨설팅	대표	기계학	
	정종원	카톨릭대학교	교수	행정학	
내부	강기룡	통계청	기획조정관	정책학	**국장**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위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100%	9명(52.9%)	6(35.3%)	-	-	1명(5.9%)	1명(5.9%)

❍ 자체평가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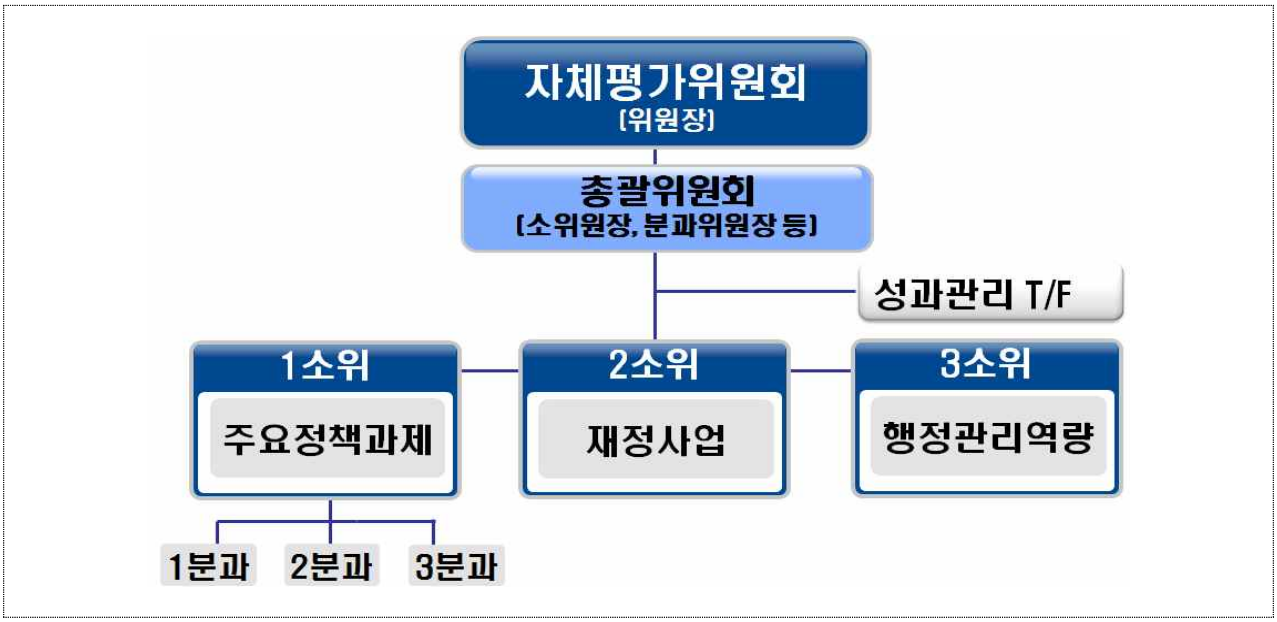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각 위원회별 임무 》

▌ 자체평가위원회

- 통계청 업무의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등 평가관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와 분야별 자체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확정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도 이에 준함

▌ 총괄위원회

- 통계청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확정** 그밖에 통계청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위원장이 통계청 업무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심의**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 평가분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제시**
-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위원회 개최)**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및 자체평가시행계획 등 의견수렴 및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개최
- **(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주요정책과제는 우리 청 주요업무 전체를 포괄하여 내용이 방대하므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

소 위	소위별 구성 내용	위 원 * 가나다순
1소위 [주요정책과제]	위원장	**전주상**
	(1분과) 11개 관리과제 * 통계정책국, 사회통계국	**원구환,** 여인권, 최현수, 심광호, 정지운
	(2분과) 12개 관리과제 * 경제통계(동향)국, 조사관리국	**김승년**, 고승희, 오영민, 이상인, 지민웅
	(3분과) 11개 관리과제 * 데이터허브국, 서비스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통계교육원	**김병철**, 권미수, 이규철, 김홍규, 정종원
		외부전문가(안경섭)
2소위 [재정사업]	위원장	**여인권**
	10개 과제 (18개 단위사업 중 10개 사업) * 예산 10억 미만 사업, 책임운영기관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김승년, 김병철, 이규철 외부전문가(임소영)
3소위 [행정관리역량]	위원장	**원구환**
	조직.인사.정보화 부문	고승희, 권미수, 김홍규, 정종원
성과관리 TF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컨설팅 및 적절성 평가 등	여인권, 김홍규, 고승희

※ 1분과(전략목표 Ⅰ-1, Ⅲ-2), 2분과(전략목표 Ⅰ-2, Ⅲ-1) 3분과(전략목표 Ⅱ, Ⅳ)
※ 소위 및 분과별 위원 구성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구 분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총괄팀	**자체평가 지원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042-481-2584**
1소위 (주요정책과제)	**주요정책과제 평가지원**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활동 및 평가 지원	1분과	**통계정책과장**	**042-481-2051**
			통계기준과장	042-481-2060
			경제통계심사조정과	042-481-2063
			사회통계심사조정과	042-481-2078
			품질관리과장	042-481-2034
			사회통계기획과장	**042-481-2233**
			인구동향과장	042-481-2250
			고용통계과장	042-481-2264
			가계수지동향과장	042-481-2359
			복지통계과장	042-481-2458
			농어업통계과장	042-481-3864
			농어업동향과장	042-481-2583
		2분과	**경제통계기획과장**	**042-481-2181**
			경제총조사과장	042-481-3770
			산업통계과장	042-481-2133
			소득통계과장	042-481-2206
			소득통계개발과장	042-481-2336
			산업동향과장	042-481-2157
			서비스업동향과장	042-481-2585
			물가동향과장	042-481-2530
			조사기획과장	**042-481-3703**
			지역통계총괄과장	042-481-3604
			인구총조사과장	042-481-3720
			표본과장	042-481-3790
			통계대행과장	042-481-3810
		3분과	**통계데이터기획과장**	**042-481-2313**
			행정자료관리과장	042-481-3825
			행정통계과장	042-481-3675
			빅데이터통계과장	042-481-6903
			마이크로데이터과장	042-481-2411
			통계서비스기획과장	**042-481-2377**
			조사시스템관리과장	042-481-2434
			공간정보서비스과장	042-481-2365
			지능정보화팀	042-481-2352
			국제협력담당관	**042-481-2095**
			교육기획과장	**042-366-6101**

※ 음영 처리된 부서는 관리과제를 통합하여 운영・평가

구 분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2소위 (재정사업)	**재정사업 평가지원**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활동 및 평가 지원	**기획재정담당관**	**042-481-2584**
3소위 (행정관리 역량)	**행정관리역량 평가지원**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활동 및 평가 지원	**기획재정담당관**	**042-481-2584**
		혁신행정담당관	042-481-2033
		운영지원과장	042-481-2001
		통계데이터기획과장	042-481-2313
		통계서비스기획과장	042-481-2377

□ 평가지원팀의 운영

❍ 평가총괄 담당

- 과제별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관리**
- 추진실적 점검 등 **평가업무 전반 총괄**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대표성 검증**
- **추진계획 대비 실적확인**
  - · 근거자료의 정확성 점검과 필요 시 과제담당자 면담 실시
- **부진·미흡과제**는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원인과 함께 조치계획 제출 요구
  - · **조치계획**에 대하여 평가주관 위원과 검토협의

❍ 소위(분과)별 평가지원팀

- 과제별 **추진실적 관리**
  -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대비 실적 관리**

> ⇒ **관리과제 담당자별로 작성하여 성과목표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전략목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제출**

  - · 추진실적 파악에 필요한 **근거자료 확인 및 제출**
- 과제별 **추진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 상 · 하반기 **추진결과 정리 및 점검**
  - ·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기준별로 정리 및 검토**

> ⇒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주관위원에 설명 및 검토**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총 46개 부서 중 38개 부서, 34개 관리과제

– 업무프로세스나 내용이 유사한 과제는 통합하여 평가(2개과를 통합하여 1개 과제로 평가)

· 조사기획과지역통계총괄과현장조사비상대응단,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 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 경제총조사과, 산업통계과

❍ 평가 제외 부서 : 순수 지원부서 등은 평가 제외

- 지원부서인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등 4개 부서

- 통계개발원(3개 부서)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대변인실은 특정평가(정책홍보)로 갈음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통계 정책과	국가통계 선도를 위한 통계정책 기반 구축	① 국가통계 개선·개발 요구 이행률(%)	82.6	개선·개발요구 이행건수 / 유효수요건수 * 100
		② 국가통계 발전 추진과제 이행률(%)	100	- 완료계획 대비 이행률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5개년 추진과제 당해 연도 완료 계획건수 중 실제 완료건수* 100
통계 기준과	활용도 높은 국가통계 작성기준 제공	① 통계분류 정보 활용 건수(천건)	28,965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에서 분류정보를 활용한 건수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경제통계 심사 조정과 (사회통계 심사 조정과)	국가통계 활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조정활동 강화	① 통계예산 사전심사 비율(%)	97.7	(예산검토된 통계종수÷승인통계종수)× 100
		② 통계지표 활용률(%)	91.0	(통계지표활용 개수÷통계지표 활용권고개수)×100
품질 관리과	고품질 통계 이용을 위한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①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 외부 평가 점수(점)	90.5	(개별통계 부문 측정점수 × 부문별가중치(0.5)) + (종합부문 측정점수 × 부문별가중치(0.5))
		② 자체통계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률(%)	55.6	(개선과제 이행완료건수 ÷ 개선과제이행건수) × 100
조사 기획과 (지역통계 총괄과)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① 통계조사 정확도 (%)	99.3	(1-오류대상처수 ÷검증완료대상처 수)×100
		② 지역통계 이용건수 (만건, 공통)	501.1	국가통계포털시스템의 지자체 작성통계 및 e-지방지표 서비스 이용건수
인구총 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 효율적 실시 및 활용도 제고	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KOSIS 이용건수(천건) (공통)	1,933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당해연도 KOSIS 이용건수
		② 등록센서스협력 서비스 외부이용자 만족도(점)	4.11	$\sum_{i=1}^{n} x_i / n$(xi :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table>
<tr><th>담당과</th><th>관리과제</th><th>성과지표</th><th>’21년
목표치</th><th>측정방법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표본과</td><td rowspan="2">모집단의 대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본설계</td><td>① 표본설계 협력점수(점) (공통)</td><td>29.7</td><td>∑(각 구성요소 12개월 실적 × 가중치)
<table><tr><th></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년 목표치*</th></tr><tr><td>실적</td><td>178</td><td>201</td><td>221</td><td>244</td><td>268</td><td>29.7</td></tr><tr><td>연평균 증가율</td><td>7.2</td><td>12.9</td><td>10.0</td><td>10.4</td><td>9.8</td><td>10.8</td></tr></table>* 목표치
26.8×{1+(10.8/100)}=29.7
* 5개년 연평균 증가율 평균
=(7.2+12.9+10.0+10.4+9.8)/5
=10.1</td></tr>
<tr><td>② 표본설계 만족도 (점)</td><td>4.28</td><td>표본설계만족도 점수
<table><tr><th></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년 목표치*</th></tr><tr><td>실적</td><td>4.16</td><td>4.18</td><td>4.07</td><td>4.20</td><td>4.24</td><td>4.28</td></tr></table>*목표치
= 4.24×{1+(0.9/100)} = 4.28
* 5개년 평균
=(4.16+4.18+4.07+4.20+4.24)/5=4.17</td></tr>
<tr><td rowspan="2">통계
대행과</td><td rowspan="2">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강화 지원</td><td>①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 정도(점) (공통)</td><td>92.5</td><td>$\sum_{i=1}^{n} x_i / n$
(x_i는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정도, n은 통계대행건수)</td></tr>
<tr><td>②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점) (공통)</td><td>94.1</td><td>$\sum_{i=1}^{n} x_i / n$
(x_i는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 n은 통계대행건수)</td></tr>
<tr><td rowspan="2">통계
데이터
기획과</td><td rowspan="2">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td><td>① 데이터 이용 활성화 노력 만족도(점)</td><td>3.7</td><td>$\sum_{i=1}^{n} x_i / n$
- x_i : 개인별 응답점수(5점척도)
n : 총응답자수</td></tr>
<tr><td>② 통계데이터 센터 연간 이용 건수(건) (공통)</td><td>314</td><td>$\sum_{i=1}^{12} x_i$
(x_i : i월의 통계데이터센터이용건수</td></tr>
</table>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행정자료 관리과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① 신규 행정 DB 구축 건수(건)	15	당해연도 ∑통계목적으로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한 신규 행정 DB 건수
		② 기업통계등록부(SBR) 활용 건수(건)(공통)	66	당해연도 ∑통계생산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 외부기관의 기업통계등록부(SBR) 활용 건수
행정 통계과	수요 변화에 대응한 행정통계 개선·개발	① 행정통계 이용자 만족도(점)	4.08	행정통계 내·외부 이용자 만족도 점수 가중평균 = x_i*0.4+x_j*0.6 x_i: 내부고객 만족도 x_j: 외부고객 만족도
		② 행정통계 이용건수(건)	329,202	행정통계 6종 연간 KOSIS 이용건수 = $\sum_{i=1}^{12} x_i$ x_i:i월의 행정통계 6종* 이용건수 *귀농어·귀촌인, 신혼부부, 일자리행정, 영리법인, 주택소유, 퇴직연금 통계
빅데이터 통계과	빅데이터 구축・활용 및 공유・개방 확대	① 빅데이터 활용 통계 서비스 건수(건)	13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한 빅데이터 활용 통계 건수
		② 빅데이터 활용 통계 이용 건수(건)	147,240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한 빅데이터 활용 통계 조회수
마이크로 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활성화	① 인가용 MDIS 이용건수(건)	929	인가용 $MDIS$ 이용건수 = $\sum_{i=1}^{12} x_i$ (x_i : i월의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
		②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 이용 건수(건)	42,457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 이용건수 = $\sum_{i=1}^{12} x_i$ (x_i : i월의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 이용건수)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서비스 이용 활성화	① KOSIS통계 자료 이용 건수 (만건) (공통)	4,062	∑(KOSIS통계표이용건수 + KOSIS모바일이용건수)
조사 시스템 관리과	표준화된 통계생산시스템 보급으로 통계생산 효율성 강화	① 나라통계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공통)	4.13	$\sum_{i=1}^{n} x_i / n$, x는 개인별 응답측도, n는 총 응답자수
		② 통계생산 시스템 활용률(%)	51.3	(통계생산시스템*활용 조사통계 수/전체승인 조사통계 수)×100 *나라통계시스템, 총조사시스템 등
공간정보 서비스과	오픈플랫폼 기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①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이용 건수 (천건)(공통)	6,510	SGIS 서비스 이용건수 (당해연도말 기준 연간 누적 페이지뷰)
		② 오픈플랫폼 연계서비스 건수 (건)	109	SGIS 오픈플랫폼 활용 콘텐츠 연계건수(당해연도말 기준 콘텐츠 연계·활용건수)
경제통계 기획과	활용성 높은 경제통계 작성·개선	① 기업체 통계이용자 만족도 (%)	3.89	기업생멸통계 및 기업활동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 Xi /n (∑ Xi: 개인별 응답 척도(5점척도), n: 총응답자수)
		② 기업체 통계 이용건수(건)	117,680	기업생멸통계 및 기업활동조사 KOSIS 이용건수= ∑KOSIS 이용 건수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경제 총조사과 (산업 통계과)	행정자료를 기반한 경제총조사 효율적 실시	① 경제총조사 이용자만족도(점) (공통)	4.02	$\sum_{i=1}^{n} x_i / n$, (xi :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당해연도 이용자 만족도 (경제총조사)
		② 경제총조사 비대면조사율(%)	14.0	∑비대면조사 완료 사업체수/ ∑현장조사 완료 사업체수 (경제총조사)
소득 통계과	지역소득 및 국가자산 통계의 이용자 적합성 제고	① 지역소득, 국가자산 및 무역통계 외부고객 만족도(점)	4.05	$\sum_{i=1}^{n} x_i / n$ x_i: 지역소득, 국가자산 및 무역통계 외부고객 만족도 점수(5점 척도) n: 지역소득, 국가자산 및 무역통계 외부고객(이용자, 관계기관, 학계 등)
		② 지역소득, 국가자산 및 무역통계 이용건수(천건)	331	∑당해연도 지역소득 작성 통계(3종) 이용건수
소득통계 개발과	지역・위성계정 통계 개발・개선 및 활용도 제고	① 지역・위성계정 통계 활용 건수(건)	6,023	∑지역・위성계정 통계 당해연도 활용건수
산업 동향과	경제・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산업동향통계 개선·개발	① 산업동향통계 외부이용자 만족도(점)	4.35	$\sum x_i / n$ $\sum x_i$: 외부고객 만족도 점수(5점 척도), n: 외부 이용자수
		② 산업동향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567	$\sum_{i=1}^{12} x_i$ $\sum x_i$: i월의 이용건수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서비스업 동향과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향통계 개선	① 서비스업 동향통계 고객만족도	3.90	평가점수 = $\sum_{i=1}^{n} x_i/n$ x_i : i 외부 이용자 평가 점수(5점) n : 총 응답자수
		② 서비스업 동향통계 이용건수(건)	804	서비스업동향조사 및 온라인쇼핑동향조사 KOSIS 이용건수= ∑KOSIS 이용 건수
물가 동향과	소비자물가통계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개선	① 물가통계 외부고객 만족도	4.24	물가통계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 $\sum_{i=1}^{n} x_i/n$
		② 물가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729	소비자물가통계 KOSIS 이용건수 ∑ KOSIS 이용건수
사회통계 기획과	사회통계 개선·개발을 통한 사회발전정책 지원	① 사회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497	당해연도 $\sum_{i=1}^{12} x_i$ (x_i: i월의 사회통계 이용건수)
		② 사회발전정책 수립 시 사회통계 이용건수(건)	9	당해연도 관계부처의 사회발전정책 수립 시 사회통계 이용건수
인구 동향과	인구통계 개발·개선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① 인구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2,652	인구통계 KOSIS 이용건수
고용 통계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고용통계 개선·개발	① 고용통계 외부고객 이용자 만족도(점)	4.10	(부문종합 만족지수×0.7) + (전반적 만족도×0.3)
		② 고용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건수(건)	24,075	고용통계(3종) 연간 MD 이용실적 *$\sum_{i=1}^{3}\sum_{j=1}^{12} x_{ij}$, i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j : 1,2,3 ⋯12월 x : MD 이용건수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가계수지 동향과	시의성 있는 가계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① 가계동향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건) (공통)	6,888	가계동향통계 연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 (통계DB시스템을 통해 산정)
		② 가계동향통계 KOSIS 이용건수(건)	715,261	가계동향통계 연간 KOSIS 이용 건수 (통계DB시스템을 통해 산정)
복지 통계과	가구의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가계통계 개선	① 가계통계 KOSIS 이용건수(건)(공통)	212,868	가계통계(가계금융복지조사) 연간 KOSIS 이용건수
		② 가계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건수(건)	5,398	가계통계(가계금융복지조사) 연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건수
농어업 통계과	농산어촌 정책 활용성 강화를 위한 농림어업통계 개선	① 농어업통계 이용자 만족도(외부)(점)	3.91	통계이용실태 및 만족도 $\sum_{i=1}^{n} x_i / n$ x_i: 농어업통계 외부고객 이용자 만족도(5점척도) n : 평가자 수
		② 농림어업통계 KOSIS 이용건수(천 건)	856	$\sum_{i=1}^{12} x_i$ (x_i : i 월의 농어업통계 KOSIS 이용건수*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농어업 동향과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한 현장 조사 효율성 제고	① 농어업동향통계 비대면 조사율	44.3	2021년 농어업동향통계(9종)의 비대면 조사율 $\sum_{i=1}^{9} x_i / 9$ (x_i : i*통계의 비대면 조사율) * 농어업동향과 소관 9종 통계
		② 농어업동향통계 활용 건수	721,720	업무용 통계 DB 관리시스템 $\sum_{i=1}^{12} x_i$ (x_i : i 월의 농어업동향통계 (9종) 업무용 통계DB시스템의 활용 건수)
국제협력 담당관실	국제 통계협력 강화	① 통계분야 ODA 사업 수원국 만족도(점)	4.15	(수원국 관리자 응답척도 합계 / 응답자 수) 40% + (교육참여자 응답척도 합계 / 응답자 수) 60% * 단,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산출
		② 국제기구 자료제공 만족도(점)	3.99	$A = (\sum_{i=1}^{n} x_i \sum_{j=1}^{5} q_j) / 5n$ qi : 문항별 응답측도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통계 교육원	통계교육 강화	① 전문교육 현업적용도 (점)(공통)	4.40	$\sum_{i=1}^{n} x_i / n$ ※ xi : 개인별 응답측도 (5점 척도) n: 총 응답자수
		② 통계교육 만족도(점)	4.40	$\sum_{i=1}^{n} x_i / n$ ※ xi : 개인별 응답측도 (5점 척도) n: 총 응답자수

2. 통합재정사업

□ 개념

❍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 **사업 수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의 **상대평가 실시**

- **우수 20% 이하**(2개), 보통 65% 내외(8개), **미흡 15% 이상**(2개)을 준수

□ 평가 대상

❍ 통계청 전체 18개 단위사업 중 책임운영기관(6개) 및 10억원 미만 사업(0개)을 제외한 **12개 사업을 평가**

* 평가대상(사업 수 기준) : '18년도부터 성과대상 실익이 없는 사업 제외

❍ 2019 ~ 2021년 통계청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단위 : 개)

회계	연번	사업명	연도별		
			2019	2020	2021
일반재정	1	국가통계정책 추진	○	○	○
	2	통계전문교육	○	○	○
	3	대내외 협력강화	○	○	○
	4	경제통계작성	○	○	○
	5	사회농어업통계 작성	○	○	○
	6	경제총조사	○	×	○
	7	인구주택총조사	○	○	○
	8	농림어업총조사	×	○	○
	9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	×	○
	10	통계조사지원	○	○	○
정보화	11	통계데이터허브(행정자료통합관리)	○	○	○
	12	통계서비스(통계정보화)	○	○	○
일반재정	13	통계개발원*	×	×	×

* 통계개발원(책임운영기관 평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3.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효율적 조직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인사·정보화분야 역량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4개 지표로 구분(조직1, 인사1, 정보화2)

❍ (조직관리)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국민소통·협업 등 조직관리 전반을 평가

❍ (인사운영) 능력개발활동의 추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등 정부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

-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준수 실적 등

❍ (정보화)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 전반을 평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
-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

❍ 객관적 평가시행을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측정기준 구성

□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21년 지표 미확정)

현행('19년)			개편('20년)		
분야	평가지표(배점)	세부지표	분야	평가지표(배점)	세부지표
조직(35)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	①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4) 삭제 ②정원감사 지적사항 이행수준(3) 삭제 ③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5) -정부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관리수준(2)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률(2) -법령정보 등재의무 이행 정도(1) ④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실적(4) - 출석회의실적(2) - 위원구성의 지역 대표성(1) - 위원회 현황공개(1) ⑤조직혁신역량 강화 실적(4) 삭제	조직(30)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30)	①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10) 신규 ②재배치정원제 운영실적(7) 신규 -재배치 계획수립(3) -재배치 추진실적(4) 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실적(5) (4→5) -출석회의 및 정비 실적(3) (항목통합, 2+1→3) -위원구성의 지역 대표성(2) (1→2) ④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3) (5→3) -정부기능분류·조직정보 관리수준 및 시스템 이용률(2) (항목통합, 2+2→2) -법령정보 등재의무 이행 정도(1) ⑤조직혁신역량 강화 제도운영 실적(5) 자율, 신규
	정책품질(15) 삭제	①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5) ②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5) ③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5)		가점(1)	⑥민간위탁 운영실적(+1) 신규
인사(30)	효율적인 정부인사운영(27)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5)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6) -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6)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4)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12)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8)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4)	인사(35)	효율적인 정부인사운영(32)	①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5) ②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6) 명칭변경 ③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4) ④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12)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8)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4) ⑤인사혁신 추진노력 및 성과(5) 자율, 신규
	선택(3)	⑤ 상시학습 이수비율(3) ⑥ 전문직위 지정 비율(3)		선택(3)	⑥상시학습 이수비율(3) ⑦전문직위 지정 비율(3)
정보화(35)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	①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14) -정보자원관리수준 측정(3)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7) -중복투자 예방(4) ②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6)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율(3)	정보화(35)	유능한 디지털정부 구현(20)	①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추진(10) (14→10) -정보자원 관리수준(3)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5) (7→5) -중복투자 예방(2) (4→2) ②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6) -웹 품질관리 수준(4) (측정내용 변경, 3→4)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율(2) (3→2) ③디지털정부혁신 우수정책 실적(2) 신규 ④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우수정책 실적(2) 신규
	사이버 안전 수준 강화(15)	①개인정보 관리수준(4) ②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6)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 ④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1)		사이버 안전 수준 강화(15)	①개인정보 관리수준(4) ②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6)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 ④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1)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 계획(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5)	ⓐ 성과지표의 대표성(2.5점)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2.5점)
	2. 계획수립의 적절성(5)	ⓐ 충실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계획에 반영(2.5점) ⓑ 정책 효과 및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한 개선.보완 사항을 계획에 반영(2.5점)
	3. 환류의 충실성(5)	○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정책개선 이행실적(5점)
	4. 과제수행 난이도(5)	ⓐ 분과별로 해당국장이 각국 소관 사항을 내부평가(5점)
2. 집행(20)	1. 추진일정의 충실성(10)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10점)
	2. 현장의견 정책개선노력 및 관련기관.정책과 협업 노력도 (10)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노력 및 현장의견 수렴, 외부 환경변화 등을 통해 정책 개선 실적(5점)
		ⓑ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업체제 유지 및 협업 성과(5점) * 현장체감도 등 협업실적 포함
3. 성과(30)	1. 관리과제 성과달성도(20)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20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연계평가
	2. 성과목표 성과달성도(10)	○ 상위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10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연계평가
4. 정책효과성 및 우수 사례(30)	1. 정책효과성(30)	ⓐ 해당과제를 통해 목표한 정책성과 발생정도(15점) ⓑ 성과지표외 계량화된 성과 및 장기적인 정책효과 발생정도(15점)
가 점	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3)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0.5) 및 성과업무 교육참석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0.5) ⓑ 국정과제, 특정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과제 선정(1.0이내)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1.0이내) * 전략목표 성과지표 관련 부서 대상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 적절성 : 5점
측정 방법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상-중-하 (2.5점)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상-중-하 (2.5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과제수행의 **정책내용 대표성, 포괄성**, 관리과제와 **연계성** 등을 종합적 고려 상 / 중 / 하 2.5 / 2 / 1.5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과제 특성을 반영한 **목표치의 도전성, 성과지표의 난이도** 등을 고려 상 / 중 / 하 2.5 / 2 / 1.5 * **단순히 업무추진 과정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과제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 성과업무 TF 팀(3명)에서 전과제를 상대평가
측정 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판단기준**(아래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음 - 외부요인의 통제가 가능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됨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 국민 정책체감형 결과 지향적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관리과제 성과지표와 중복시키거나, 관리과제의 복합지표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19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판단기준** -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했는지 명확히 제시 * **성과지표의 난이도**, 목표치 산정에 사용된 **과거실적 자료의 객관성**,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일반적인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판단기준은 【참고】 참조
근거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참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판단기준 예시

* 부서 및 평가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로는 **평가위원이** 전반적인 정책추진 상황 및 정책 환경,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1.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존재하는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 2개년간 연평균 증가율

(예시) 000 간행물 활용건수

실적치			'21년 추세치
'18년	'19년	'20년	
100.0	103.0	110.0	115.4*

3.0% 6.8% 4.9%

* 추세치 산식 :110.0×{(3.0+6.8)/2}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평균값

(예시) 000개발 건수

실적치			'21년 추세치
'18년	'19년	'20년	
12	7	5	8*

* 추세치 산식 : (12+7+5)/3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한 경우

- 하강 후 상승국면인 경우 : 상승국면의 증가율('19~'20) 상향

(예시) 000개발·개선 발굴률

실적치			'21년 추세치
'18년	'19년	'20년	
10.7	8.9	**9.5**	10.1*

* 추세치 산식 : 9.5×(9.5/8.9)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예시) 000 총조사결과 KOSIS이용건수(만건)

실적치			'21년 추세치
'18년	'19년	'20년	
80	90	75	82*

* 추세치 산식 : (80+90+75)/3

2. 최근 2년간('19~'20년) 실적치가 존재하는 경우

- 상승국면인 경우 : 상승 추세치('19~'20년 증가율) 반영
- 하향국면인 경우 : 둘 중 높은 실적치('20년) 수준

3. 전년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 : 전년대비 10% 상승

- 5% → 5.5%(상승률 10%)

4. 최근 실적치('19년, '20년)가 없는 경우(신규사업 등)

-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5.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 등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도 적극적 인정

※ **다만, 만족도 지표는 임계치 수준에 도달한 경우 상기 추세치의 1/2만 반영** (임계치를 고려한 정성적 판단)

평가지표	1-2. 계획수립의 적절성 : 5점
측정 방법	▪ 사전조사, 의견수렴, 정책효과 및 장·단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21년도 계획수립시 반영하였는지 여부 * 부득이한 경우 '20년 11~12월에 수립한 '21년도 계획도 포함하여 인정 ⓐ 충실한 사전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이를 계획에 반영(2.5점) * 주요고객 및 현장의견의 수렴과 이의 반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기술 ⓑ 정책 효과 및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한 개선·보완사항을 계획에 반영(2.5점) · ⓐ, ⓑ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탁월) : 5점 · ⓐ, ⓑ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우수) : 4점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보통) : 3점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미흡) : 2점 · ⓐ, ⓑ 모두 불이행(저조) : 1점 ☞ 평가등급 적용기준 : (정성) 상대평가
측정 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충실한 사전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이를 계획에 반영 * 사례분석, 사전조사 등 세부내용별 실시여부 보다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실하게 하였는지를 과제의 특성을 고려, 종합적 판단 [사례분석,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현장요구조건의 의견수렴이 충분한 경우 - 이런 분석결과가 계획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수립된 경우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에 반영 ⓑ 정책 효과 및 장·단점 분석 결과를 개선·보완사항을 계획에 반영 - 이해관계자와 인과관계,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에 충실히 반영

측정 기준	(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BC 분석(편익비용분석, Benefit-Cost analysis) : 정책의 비용은 물론 결과 혹은 효과도 모두 계량화하여 정책의 비용과 그로 인해 국민이 누리게 될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계산 - 사례분석,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 후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 정책 효과 및 장·단점 분석 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반드시 계획수립 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작성 시('21.3월)까지 실시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정성평가)

근거자료	◦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 시 분석자료 ◦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 메모, 문서, e-mail 등 각종 증빙자료

평가지표	1-3. 환류의 충실성 : 5점

측정방법

▪ 전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및 올해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정책개선을 위한 환류 이행실적**

○ 정부업무평가결과 부진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정책개선 실적(5점)

< 세부측정 방법 >

- 전년도 평가(특정평가,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항, '20년 자체평가위원 과제 컨설팅 내용에 대한 개선계획 및 이에 대한 정책개선 실적
-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정책개선 실적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5	4	3	2	1

☞ 평가등급 적용기준 : (정성) 상대평가

측정기준

▪ **전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부진사항**, 자체평가위원 과제 컨설팅 내용 등에 대한 **정책개선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정책개선 실적**

- 전년도 평가(특정평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21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 부진사항에 대해 개별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일정을 명확히 제시

※ 자체평가위원 과제 컨설팅 내용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술

- 상기 개선조치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개선 실적 및 조치시한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한 사항을 기재

▪ 전년도 감사원 및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부정적 언론내용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 실적

* 이행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평가시점에 정상 추진 중인 경우 인정

근거자료

◦ 과제에 대한 정책환류 이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4. 과제 수행 난이도 : 5점** * 내부평가 실시

측정 방법

▪ 관리과제에 대한 '수행 과정의 난이도' 정도를 판단

> **[과제 수행 난이도가 높은 경우]**
> ① 신규사업(유사사례 등 유무로 정성적 판단)
> ② 다수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과제
> ③ 관련 부처(부서)간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외생적 변수가 많은 과제
> ④ 높은 전문성 및 추진절차가 복잡한 과제

- 높은 수준(**탁월**) : **5점**
- 중간 수준(**우수**) : **4점**
- 낮은 수준(**보통**) : **3점**

☞ **분과별로 각국 소관 사항을 해당국장*이 상대평가**

*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계교육원은 **총괄위원회**에서 일괄 평가

측정 기준

▪ **「과제 수행 난이도」 '충족' 판단 기준**

- 사업추진 과정 전반적 상황을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복잡성	· 사업추진과정에 타 기관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가?
전문성	· 과제 추진을 위한 기획, 의사결정, 추진과정에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가?
통제성	· 업무추진에 있어 외부 환경 변수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신규 사업'은 '21년 시작한 것으로 유사사례 등의 유무를 정성적으로 판단

* 이해관계 연계여부, 외생변수 발생여부는 문서, 메모 등 증빙이 가능해야함

근거자료

◦ 과제 수행 과정의 난이도 판단 근거자료
◦ 메모, 문서, e-mail 등 각종 증빙자료

평가지표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10점
측정방법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분기별** 준수, VIP 업무보고계획 등의 각 과 주요 업무 과제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적시성 있게 추진 여부 * **과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분기별 준수 여부** -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탁월**) : **10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5%이상~100%미만인 경우(**우수**) : **8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70%이상 ~ 85%미만(**보통**) : **6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70%미만인 경우(**미흡**) : **5점** * **연두업무보고계획 등의 주요사업을 누락한 경우 감점** ☞ **평가등급 적용기준 : (정량) 절대평가**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2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분기**단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의 판단은 기계적 판단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없이 전반적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인가를 판단하여 결정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70%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일정점수(1점)를 부여 **<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 재난(코로나19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기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등
근거자료	◦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및 일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 등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메모, 문서, e-mail 등) ◦ 메모, 문서, e-mail 등 각종 증빙자료

평가지표	**2-2. 현장의견 정책개선 노력 및 관련기관 · 정책과 협업 노력도 : 10점**
측정방법	▪ **계획수립 후**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언론 등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 문제점에 개선 실적 ▪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개선 노력 및 효과(기대)정도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노력(5점) - 현장방문, 간담회, 정책수요자 FGI, 전문가 세미나 등 - 현장의견 수렴, 외부 환경변화 등을 통해 정책 개선 실적 ▪ **계획수립 후** 정책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업, 연계 및 협조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였는지 여부 ⓑ 관련기관 · 정책과의 협업체제 유지 및 협업 성과(5점) * 현장체감도 제고 등 협업 성과 및 해당 국(원)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간 협업 성과 포함 · ⓐ, ⓑ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탁월**) : 10점 · ⓐ, ⓑ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우수**) : 8점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보통**) : 6점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미흡**) : 4점 · ⓐ, ⓑ 모두 불이행(**저조**) : 2점 ☞ **평가등급 적용기준 : (정성) 상대평가**
측정기준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노력 및 정책 개선 실적** - 정책토론 등은 주요정책 과제 중 정책대표성 있는 것 인정하며 지엽적인 것은 불인정 - 현장의견 수렴 및 외부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전문가, 정책수요자의 의견 반영실적 및 개선 효과 ⓑ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업체계 유지 및 협업 성과**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업, 연계 및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충족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업 실적과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
근거자료	◦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운영 실적 및 개선 효과 등 ◦ 메모, 문서, e-mail 등 각종 증빙자료

평가지표	3-1. 관리과제 성과달성도 : 20점

측정방법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과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를 '1-1.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연계하여 배점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				
1-1. 성과 지표의 적절성	상	**98% 이상**	90%이상 ~98%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70% 미만
	중	-	**98% 이상**	90%이상 ~98%미만	80%이상 ~90%미만	80% 미만
	하	-	-	**98% 이상**	90%이상 ~98%미만	90% 미만
배점		(탁월) 20점	(우수) 19점	(보통) 18점	(미흡) 17점	(저조) 16점

☞ **절대평가**(등급 내는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배점)

* 정책추진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과제별로 최종 배점

측정기준

▪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소수점 첫 자리에서 사사오입**

- 성과지표가 2개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

* 단, 성과지표가 2개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

예시) 관리과제 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60%, 40%일 때, 성과지표 a를 130%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96%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A의 목표달성도 = 98%(100%×0.6+96%×0.4 = 98.4)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가 **150% 이상**인 경우는 '1-1. 성과지표의 적절성'의 'ⓑ목표치 적극적 설정' 정도를 재평가 가능

근거자료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3-2. 성과목표 성과달성도 : 10점

측정방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도를 감안하여 배점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				
성과 지표의 적절성	상	98% 이상	90%이상 ~98%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70% 미만
	중	-	98% 이상	90%이상 ~98%미만	80%이상 ~90%미만	80% 미만
	하	-	-	98% 이상	90%이상 ~98%미만	90% 미만
배점		(탁월) 10점	(우수) 9점	(보통) 8점	(미흡) 7점	(저조) 6점

☞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등급별 평가**

☞ **'성과목표 성과달성도'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연계하여 목표달성률에 따라 절대평가**

☞ 동 지표는 성과목표 단위 평가이므로, 평가점수는 **하위 관리과제 모두 동일하게 배점**

측정기준

▪ **'성과목표별 성과목표 달성도' 배점 기준**

- 우선,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정책대표성, 적극적 목표설정) 정도(상/중/하*)를 정성적으로 판단

  * '성과지표의 적절성' 판단은 '1-1. 성과지표의 적절성' 내용 참조

- 성과목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소수점 첫 자리에서 사사오입

-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

  * 단, 성과지표가 2개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

예시) 성과목표 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60%, 40%일 때, 성과지표 a를 130%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90%달성한 경우

⇒ 성과목표 A의 목표달성도 = 96%(100%×0.6+90%×0.4=96.0)

근거자료	◦ 상위 성과목표를 달성한 점수 근거자료 등(공문, 메모 등)

평가지표	4-1. 정책효과성 (30점)

측정방법

▪ 해당과제를 통해 **목표한 정책성과가 발생한 정도 및 향후 효과 발생 기대정도**

ⓐ 해당과제를 통해 목표한 정책성과 발생 정도(15점)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및 장기적인 정책효과 발생정도(15점)

ⓐ 해당과제를 통해 목표한 정책성과 발생 정도

과제수행으로 인해 결과지표 등의 성과, 관련된 통계 또는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와 수행성과에 대한 국민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등 포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4～15	12～13	10～11	8～9	6～7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및 장기적인 정책효과 발생정도

과제 추진하면서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및 장기적으로 과제가 목표한 효과가 발생 또는 지속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는 정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4～15	12～13	10～11	8～9	6～7

측정기준

▪ 과제추진 시 나타난 **성과를 작성하며 가급적 수치화하여 기술**

- 정책(사업) 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한 결과(효과)를 기술
  - 특히, 예산절감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방안을 반드시 기재

※ 사전에 주요고객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나타난 성과도 있으면 기술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및 추가적으로 나타난 효과 포함

▪ 과제수행으로 나타난 **성과지표 외 전년대비 계량화된 성과** 및 **장기적인 기대효과** 등을 기술

- 성과지표 외 전년대비 향상된 계량 성과
-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편익 증진 정도
- 과제 추진시 문제점, 갈등·대립 등 개선 극복 정도
- 경제적, 사회문화적,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향후 효과 기대정도
- 정책수행을 통해 국정기조에 기여한 정도

※ 국정과제 지원 주요정책, 협업·정상화 등 과제에 기여한 성과를 추가 기술

근거자료	◦ 과제가 목표한 성과 발생 정도 또는 기대되는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자체평가 가점지표】 성과관리 내실화 노력도 : 3점

측정방법

▪ 성과목표 체계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 특정평가 과제에 선정, 정부업무평가 관련 교육 등 협조율 등을 측정하여 가점 부여

평 가 항 목	점수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0.5)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0.5)	1.0
ⓑ 포용국가·국정과제·특정평가, 사회적 가치측정 과제 선정	1.0 이내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	1.0 이내

☞ ⓐ 성과관리 T/F 위원의 외부평가 및 기획재정담당관 절대평가
ⓑ 혁신행정담당관실 결과 통보 및 자체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종합심사
ⓒ 국민성과참여단 체감도 조사 결과 및 자체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종합심사

측정기준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0.5점)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내용을 연계하여 정부업무평가 지침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성과지표 제외)

등급	탁월	우수	보통
점수	0.5	0.4	0.3

○ 성과업무 교육 참석 및 자료제출 기한준수(0.5)

등급	탁월	우수	보통
점수	0.5	0.4	0.3

ⓑ 국정과제·특정평가·포용국가, 사회적가치 측정 과제(성과지표) 선정(1.0점)

-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과제(주요정책, 일자리 과제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과제, 포용국가관련 과제 선정시 자체평가 총괄위(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종합심사에서 0.5점이내 부여
- 정부혁신 중 사회적 가치부문에 과제(성과지표) 선정시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1차 평가후, 자체평가 총괄위(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종합심사에서 0.5점이내 부여

ⓒ 국민참여·체감도 우수과제 및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가점

- 국민참여단 평가점수 및 국민체감도 우수과제에 대하여 0.5점이내 부여
-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기여부서에 대하여 0.5점이내 부여

2. 재정사업

<table>
<tr><th>평가지표
(배점)</th><th colspan="2">내부 배점기준</th></tr>
<tr><td rowspan="8">•(1-1) 사업의 적정성(10점)</td><td colspan="2">□ 사업 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10점)

(1) 정부지출 필요성 (5점)
- 지자체 및 민간이 아닌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td></tr>
<tr><td>매우필요
(5점)</td><td>ㅇ 지자체 및 민간이 아닌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td></tr>
<tr><td>필요
(4점)</td><td>ㅇ 지자체 및 민간이 아닌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td></tr>
<tr><td>보통
(3점)</td><td>ㅇ 지자체 및 민간이 아닌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보통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td></tr>
<tr><td colspan="2">(2) 사업방식의 효과성 및 재원분담 적절성 (5점),
- 직접 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민간과의 재원분담 가능성 검토
- 보조 사업의 경우 현행 보조 비율의 적정성 검토</td></tr>
<tr><td>매우적절
(5점)</td><td>ㅇ 사업방식의 효과성 및 재원분담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td></tr>
<tr><td>적절
(4점)</td><td>ㅇ 사업방식의 효과성 및 재원분담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td></tr>
<tr><td>보통
(3점)</td><td>ㅇ 사업방식의 효과성 및 재원분담의 적절성이 보통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td></tr>
<tr><td rowspan="4">•(2-1) 집행률 제고 노력
(30점)</td><td colspan="2">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점)</td></tr>
<tr><td colspan="2">※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단,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작성했다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정상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음)</td></tr>
<tr><td>예
(30점)</td><td>ㅇ 3년('18~'20)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

* 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4분기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td></tr>
<tr><td>상당한 정도
(25점)

어느 정도</td><td>ㅇ 3년('18~'20) <u>가중치 적용한 평균 집행률</u> 95% 이상

ㅇ '20년 집행률은 100% 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ㅇ '20년 집행률이 100% 미만이나, 제도개선노력(사업의 제도적 개선, 예산규모조정 등 / 단, 외부 지적에 의한 제도개선은 아님)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년 집행률이 95% 이상인 경우</td></tr>
</table>

<table>
<tr><th>평가지표
(배점)</th><th colspan="2">내부 배점기준</th></tr>
<tr><td rowspan="3"></td><td>(20점)</td><td>ㅇ 3년('18~'20) 가중치 적용한 평균 집행률 70~95% 수준
ㅇ '20년 집행률은 100% 미만이나,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19년 집행률이 85% 이상인 경우
ㅇ 집행률은 100%이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ㅇ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td></tr>
<tr><td>아니요
(15점)</td><td>ㅇ 3년('18~'20) 가중치 적용한 평균 집행률 70% 미만
ㅇ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20년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ㅇ 불가피한 사유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사업 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 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 처리</td></tr>
<tr><td colspan="2">※ 가중치 적용한 평균 집행률 = ('20년 집행률*50%) +('19년 집행률*30%) + ('18년 집행률*20%)
※ 예상집행 가점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등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2점 범위 내 가점 가능</td></tr>
<tr><td>•(3-1) 목표 설정의 적극성 및 달성도 (40점)</td><td colspan="2">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점)
<table>
<tr><th colspan="4"></th><th>최종점수</th></tr>
<tr><th colspan="4"></th><th>(6)</th></tr>
<tr><th>목표의 적극성</th><th>성과목표 달성률</th><th>목표달성 노력도</th><th>성과지표별 가중치</th><th>감점</th></tr>
<tr><td>(1)</td><td>(2)</td><td>(3)</td><td>(4)</td><td>(5)</td></tr>
</table>
(1) 목표의 적극성 : 10점
- 매우적극 (10점), 적극(9점), 보통(8점)
(2) 성과목표 달성률(%) : 20점
- 성과지표 달성실적/성과지표 (목표달성 시 20점 만점)
(3) 목표달성 노력도 : 10점
- 매우적극 (10점), 적극(9점), 보통(8점)
(4) 성과지표별 가중치 : 성과계획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가중치
※ 가중치 삭감의 경우 반영</td></tr>
</table>

평가지표 (배점)	내부 배점기준
	-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재부의 사전 확인·점검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수정성과계획서상에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하지 않는 경우 -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 (5) 감점여부 반영 : △5점 - 실적이 출처기관의 실제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6) 최종점수 = 〔{ (1) + (2) + (3) } × (4)] - (5)** ※ (1) 목표의 적극성과 (3) 목표달성 노력도 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한 값(소수 1자리로 반올림) 적용

□ 목표의 적극성 측정기준	
매우적극 **(10점)**	ㅇ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5%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ㅇ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5% 이상 높아진 목표는 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
적극 **(9점)**	ㅇ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3%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ㅇ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3% 이상 높아진 목표는 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
보통 **(8점)**	ㅇ 성과지표의 목표가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3% 미만으로 향상된 목표를 제시한 경우 ㅇ 만족도 지표는 목표의 적극성을 "보통"으로 산정 ㅇ 신규지표는 해당 신규지표 기준 과거 3개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보통"으로 평가 ㅇ 외부요인(예산증가 등)으로 성과목표가 증가한 경우, 외부변화 비율(ex 예산증가율) 대비 목표지표 증가율로 판단

□ 목표달성 노력도 측정기준	
매우적극 **(10점)**	ㅇ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매우 효과적이며 우수한 경우
적극 **(9점)**	ㅇ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우수한 경우
보통 **(8점)**	ㅇ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평가지표 (배점)	내부 배점기준	
•(3-2) 사업 성과의 우수성 (10점)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10점)** ※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평가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예 **(10점)**	**<모두 충족>** ㅇ 독립된 제3자*(부처 내 독립된 평가부서 평가 인정)가 실시한 사업평가·성과분석보고서(지역발전)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2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 1) 최근 2년 이내 2) 단위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우수성 인정받은 경우 인정 3) 체크리스트 측정 불인정 (* 예산정책처 사업평가보고서, 기재부 심층평가, 사업시행주체, 통계진흥원 제외) ㅇ 자제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상당한 정도 **(8점)**	ㅇ 독립된 제3자(부처내 독립된 평가부서 평가 인정)가 실시한 사업평가·성과분석보고서(지역발전)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1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 1) 최근 2년 이내 2)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중 50% 이상의 성과우수성 인정받은 경우 인정 3) 체크리스트 측정 불인정 ㅇ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1점 내외의 가감 가능
	어느 정도 **(6점)**	ㅇ 외부기관을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제3자 평가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 1) 해당 단위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2)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등 사업평가 방법론이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여부로 사업의 우수성을 판단한 경우 3) 사업평가 방법론은 적절하나, 평가 주체가 산하기관 등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1점 내외의 가감 가능
	아니요 **(4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 ㅇ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예결위·예산정책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ㅇ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1점 내외의 가감 가능

<table>
<tr><th>평가지표
(배점)</th><th colspan="2">내부 배점기준</th></tr>
<tr><td></td><td colspan="2">※ 기타 외부에 의한 성과우수성 인정 사례
* (학계 및 전문가 의견) 주요 학술지, 외부 연구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에서 사업 성과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 (언론 상의 우수성 실적) 주요 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경향신문) 가판 및 지상파 공중파(종편 제외) 뉴스에서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 (외부 수상 실적) 시민단체 및 협회 등에서 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여 포상한 경우 등
* 개인이 받은 외부표창의 경우에도 현재 기관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인정</td></tr>
<tr><td rowspan="5">•(4-1)
제도개선
노력
(10점)</td><td colspan="2">□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점)
ㅇ 전년도 자율평가 결과 및 국회, 감사원, 언론, 타 평가제도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류</td></tr>
<tr><td>매우적극
(10점)</td><td>ㅇ 전년도 자율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ㅇ 전년도 자율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경우</td></tr>
<tr><td>적극
(9점)</td><td>ㅇ 전년도 자율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상당히 반영한 경우</td></tr>
<tr><td>보통
(8점)</td><td>ㅇ 전년도 자율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반영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td></tr>
<tr><td>미흡
(6점)</td><td>ㅇ 전년도 자율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td></tr>
<tr><td>·감점(3점)</td><td colspan="2">□ ‘20년도 기간 중 타 평가 및 국회·감사원·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성과 미흡 등으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경우
<u>(3점범위 내에서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1~3점 감점)</u>
* 유사중복 지적 포함</td></tr>
<tr><td rowspan="3">•가점(5점)
(일반재정)</td><td colspan="2">(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u>(가점 5점)</u></td></tr>
<tr><td colspan="2">□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인</td></tr>
<tr><td colspan="2">□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 등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u>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u> 최근 2년 이내 실적)
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시)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 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우</td></tr>
</table>

평가지표 (배점)	내부 배점기준
	* 효과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수치가 명확히 측정되어야 함 * 감사원, 국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님 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 성과금 인정 자료
•가점(5점) (정보화)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가점 5점)**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업무·대민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최근 2년 이내 실적)** 가.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를 비용절감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활용이 낮거나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한 경우 나. 정보화사업을 통해 내부 행정업무 및 외부 대민서비스 개선, 국제협력관계 제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 예시) 행정업무 개선 : 업무절차 개선, 정보연계·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 * 예시) 대민서비스 개선 : 소득증대, 정보격차해소, 절차단축, 신규 수혜자 발굴 등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및 대국민편익 증진 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 정보화 사업의 기능 통폐합 이전과 이후 간에 비교 가능하거나, 업무처리방식 또는 대민서비스 개선에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경우) 인정** ※ 정보시스템이 수반되지 않는 정보화사업(국제협력, 지원사업 등)의 경우, '나'항목에 답변
	□ 평가근거/자료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비용절감 관련 자료 -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객관적 실적 자료

3. 행정관리역량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세부지표	①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 각 기관의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을 정성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 방법** : 조직진단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 **자체평가 위원의 평가기준** : (1) 탁월(10) : 조직진단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의 성과 등이 탁월하고 파급효과 등이 우수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기관의 행정관리역량제고에 기여한 바가 큼 (2) 우수(7.5) : 조직진단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의 성과 등이 우수하고 결과의 파급효과 등이 인정돼 기관의 행정관리역량제고에 적절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됨 (3) 보통(5) : 조직진단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의 운영성과가 충분하지 않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추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미흡(2.5) : 조직진단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성과가 저조하고 파급효과 등이 없어 추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미실시(0) : 조직진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최종 점수산정 방법** : 자체평가 위원 5인(외부) 이상의 평균점수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실적인정기준 및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세부지표	② 재배치정원제 운영실적(7점)
측정방법	○ 각 부처의 재배치계획 수립과정 및 재배치 추진실적 평가 **※ 재배치정원제 개요** ► 개념 :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全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핵심수요에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제도 ►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4·5급 이하 일반직·특정직 정원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보좌기관 제외 ► 운영 : 각 부처가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해당연도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행안부는 부처가 제출한 재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인·점검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2020. 12. 31.** ○ **평가목적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재배치정원제'에 따른 재배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세부 평가기준** **가. 재배치계획 수립(3점)** - **탁월** : 외부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규모가 대상정원의 1% 이상 - **우수** : 부처 자체적으로 내부조직진단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규모가 대상정원의 1% 이상 - **보통** : 재배치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규모가 대상정원의 1% 미만 - **미흡** :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재배치 대상정원 산정** ► 대상정원 : 총 정원('19년말 기준정원)에서 재배치 제외대상을 뺀 나머지 * ①정무직, ②별정직, ③임기제, ④직위자, ⑤전문직 공무원, ⑥전문경력관, ⑦한시정원, ⑧신설기구·신규인력 평가대상, ⑨기타 업무성격상 재배치 추진이 부적합한 정원 ► 부처가 제출한 대상정원 및 제외대상 내역을 행안부가 확인하여 최종 확정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점	1.5점	0.7점	0점

세부지표	② 재배치정원제 운영실적(7점)

나. 재배치 추진실적(4점)

- **탁월** : 재배치 추진실적이 대상정원의 1%를 초과하는 경우
- **우수** : 재배치 추진실적이 대상정원의 1%인 경우
- **보통** : 재배치 추진실적이 대상정원의 1% 미만인 경우
- **미흡** : 재배치 추진실적이 없음

※ 재배치 추진실적 검토절차

► 부처가 2020년도 재배치 추진실적을 행안부에 제출('21년 1월)

► 행안부는 부처가 제출한 실적이 재배치정원제의 재배치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실적 인정·통보('21년 1월)

* **①지역 간 재배치** : 지역별 인구 수, 행정수요 등을 고려, 지역 간 업무량·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정원을 감축, 타 지역으로 재배치

* **②기관 상·하 간 재배치** : 국민 접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상급기관(본부, 지방청 등)의 정원을 감축, 하급기관(소속기관, 일선기관 등)으로 재배치

* **③기능 간 재배치** : 행정수요 감소 등 기능감소·쇠퇴분야의 정원을 감축, 국정과제 및 사회적 현안 등 신규·핵심 수요에 재배치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점	2.5점	0.7점	0점

세부지표	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실적(5점)
측정방법	○ 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출석회의 및 정비 실적, 위원 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평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관리대상 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행안부 관리대상 목록('19.12월 기준)에 있는 위원회**
측정기준 (착안사항)	○ **측정목적**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지역대표성 제고 ○ **평가대상 기간 : 2020. 1. 1.~12. 31.** ○ **세부 측정기준** **가. 출석회의 및 정비 실적(3점)** ○ **<산출식>** (출석회의 개최율①×40%) + (위원회 정비율②×60%) 구 간 / 100% / 100% 미만 ~ 75% 이상 / 75% 미만 ~ 50% 이상 / 50% 미만 ~ 25% 이상 / 25% 미만 배 점 / 3 / 2.25 / 1.5 / 0.75 / 0 ① **(출석회의 개최율)** 관리대상 위원회 중 3회 이상 출석회의 * 개최 위원회 수 / 관리대상 위원회 수 * 본회의·분과위원회 회의(영상회의 포함) <출석회의 개최율 산정 시 **관리대상 위원회 제외기준**> * 위원 미구성, 장기간 회의 미개최 등의 사유로 임의적으로 모수 제외 금지 * 평가대상 기간 내 폐지된 위원회 및 위원회 정비(폐지, 통합, 협의체 전환) 대상으로 정비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행안부와 협의 필요) * 법령상 사건·사고발생 및 안건 상정 시에만 개최되는 위원회는 3년 이상 회의 실적(서면회의 포함)이 없을 경우(행안부와 협의 필요) ② **(위원회 정비율*)** 정비대상 위원회 중 정비완료 위원회** 수 / '20년 정비대상 위원회 수 * 정비 대상 위원회가 없는 경우 위원회 정비율은 100%로 산정 ** 당해연도에 정비법령(안)이 국회 제출된 위원회 포함

세부지표	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실적(5점)

나. 위원구성의 지역 대표성(2점)

○ **<산출식>** 위원회별 비수도권 위원 위촉률* / 관리대상 위원회 수

* 비수도권 위원(직장(재직 기준, 퇴직자의 경우 직전 근무지) 주소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민간 위원 수 / 위촉 민간 위원 수

(예) A위원회 45%, B위원회 35%, C 위원회 25%, D위원회 10% 인 경우
⇒ (45%+ 35% + 25% + 10%) / 4 = 28.8%

구 간	40% 이상	40% 미만~34% 이상	34% 미만
배 점	2	1	0

<위원구성의 지역대표성 산정 시 **관리대상 위원회 제외기준**>

* 위원 미구성, 장기간 회의 미개최 등의 사유로 임의적으로 모수 제외 금지

* 평가대상 기간 내 폐지된 위원회 및 위원회 정비(폐지, 통합, 협의체 전환) 대상으로 정비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행안부와 협의 필요)

* 법령상 사건·사고발생 및 안건 상정 시에만 개최되는 위원회는 3년 이상 회의 실적(서면회의 포함)이 없을 경우(행안부와 협의 필요)

<위촉 민간 위원 수 **제외기준**>

* 당연직, 사실상 당연직 등의 사유로 임의적으로 모수 제외 금지

* 법령상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행안부와 협의 필요)

* 법령상 사실상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행안부와 협의 필요)

- 법령에 위촉직 위원의 기관만 명시된 경우 '3회 이상 연속으로' 기관의 특정 직위가 위촉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법령상 특정단체나 기관 등 외부(중앙행정기관은 제외)에 위촉직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어 사실상 위촉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 법령에 위촉직 위원의 기관과 직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다만, 전문분야 특성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3회 이상 연속으로' 기관의 특정 직위가 위촉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세부지표	④ 정부조직정보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3점)
측정방법	○ 정부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관리수준 및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 이용율 평균을 통해 시스템 이용 활성화 노력도 평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령 등을 기준으로 조직정보* 변경이 포함된 상·하위법령 등의 시행일 차이를 평가 * 기구 신설·폐지, 정원표(기준·운영), 보임직급, 존속기한 등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대상기간** : 2020.1월 ~ 2020.12월

○ **평가관련 자료수집** : 시스템별 등록 현황자료 활용

○ **평가기준**

가. 정부기능분류·조직정보 관리수준 및 시스템 이용률(2점)

- 정부기능분류・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중인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기구・정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정비 실적 (∑1월 ~12월 기능분류 정비실적/12)+(∑1월 ~12월 조직정보 정비실적/12)
- 기구·정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에 관련 내용 반영 (시스템활용 업무처리 건수/ 전체 업무처리 건수) × 100

구분	구간	100%	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기능분류·조직정보 관리	배점	1	0.7	0.4	0
조직관리시스템 이용률	배점	1	0.7	0.4	0

* 기능분류·조직정보는 매월 평가(각 0.5 또는 0점)하고, 연말 평균으로 구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정보별 정비대상 >

구분		정비대상
기능분류·조직정보 정비(1점)	기능분류	o 폐지부서가 존재하는 단위과제 o 1개의 수행부서만 설정된 공통유형의 단위과제 o 미확정된 기록물 관리정보
	조직정보	o 기구정보, 정원정보(한시포함) : 등록현황, 기관장보임정보, 생성・폐지・존속일, 기구분류속성, 정원 o 부서별정원배정표(조직법령 시행일 및 재배치이력 기준) o 본부 및 소속기관 위치(주소)정보
조직관리 시스템 활용 (1점)		o 직제·시행규칙·기본운영규정 등 제·개정 등으로 기구·정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에 관련 내용 반영 여부 * 직제·시행규칙·기본운영규정 등 제·개정이 발생한 당월을 기준으로 평가

세부지표	④ 정부조직정보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3점)

나. 법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 등재 이행 정도(1점)

- 평가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조직관련 법령(직제 등)의 제·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위법령(시행규칙·기본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시행일 차이를 평가

  * 평가대상은 조직관련 상·하위법령이 연계되어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만 개정 시 개정내용 확인 후 평가대상으로 추가

※ 계산식 : 상·하위 법령 시행일 차이의 평균값

○ 책임운영기관이 없는 기관 : $\frac{\sum(|\text{직제 시행일} - \text{직제 시행규칙 시행일}|)}{\text{평가대상 법령 또는 행정규칙 수}}$

○ 책임운영기관이 있는 기관 :

$$\frac{\sum(|\text{직제 시행일} - \text{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 \sum(|\text{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 \text{행정규칙 시행일}|)}{\text{평가대상 법령 또는 행정규칙 수}}$$

평균 등재 지연일	0~2일	3~5일	6~7일	8~10일	11일 이상
배점	1점	0.8점	0.5점	0.2점	0점

세부지표	⑤ <자율지표> 조직혁신역량 강화 제도운영 실적(5점)
측정방법	○ 각 기관의 조직혁신 역량강화 노력사례를 정성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방법** : 조직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실시한 사례를 선정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 **대상 사례** : 국민참여조직진단 실시, 협업정원 운영, 벤처형 조직 설치, 긴급대응반 설치 중 택 1 ※ 단, 위의 대상 중 실시사례가 없는 부처는 유동정원제, 임시조직, 총액인건비제, 책임운영기관 우수 운영사례 중 택 1 ○ **자체평가 위원의 평가기준** : - 탁월(5점) : 제도의 운영성과와 효율성 등이 탁월하고 파급효과 등이 우수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큼 - 우수(4점) : 제도의 운영성과와 효율성 등이 우수하고 결과의 파급효과 등이 인정돼 기관의 행정관리역량제고에 적절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됨 - 보통(3점) : 제도의 운영성과가 크지 않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흡(2점) :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그 성과가 저조하고 파급효과 등이 없어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실시(0점) : 조직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시행한 바가 없음 ○ **최종 점수산정 방법** : 자체평가 위원 5인(외부) 이상의 평균점수 ○ **실적인정기준 및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구분	인정기준
국민참여조직진단 실시	본부(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국민참여조직진단 실시
협업정원제 운영	협업정원 운영
벤처형 조직 설치	벤처형 조직 설치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지정) - 직제시행규칙 개정없이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
긴급대응반 설치	긴급대응반 설치·운영

세부지표	⑥ <가점지표> 민간위탁 운영실적(+1점)
측정방법	○ 민간위탁사무의 위탁 근거 등 정비 실적 ○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실적 ○ 민간위탁 운영 관리·감독 실적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대상기간** : 2020.1월 ~ 2020.12월 ○ **평가기준** **가. 민간위탁사무의 위탁 근거 등 정비 실적(가점 0.5점)** - 개별 법령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규정 정비 실적 * 현행 「행정위임위탁규정」의 위탁 근거를 개별 법령에 마련하도록 노력

인정기준	가점
현행 「행정위임위탁규정」에 규정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개별법령에 위탁근거를 마련한 경우	0.5점

나.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실적(가점 0.2점)

-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사전심의 필요

인정기준	가점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실적이 있는 경우 * 위원회 명칭과 상관없이 관계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가 심의한 경우	0.2점

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가점 0.3점)

- 위탁기관의 장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에 대해 점검 및 성과평가 등 실시
- 부처의 관리·감독 실시율(%) : 모니터링(점검·감사 또는 성과평가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개수 / 부처의 전체 민간위탁사무 개수

* 평가기간 내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점검, 감사 및 성과평가 등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기준	가점
민간위탁 관리·감독 실시율(%) : 100%	0.3점
90%~100%미만	0.2점
80%~90%미만	0.1점

2.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5점)

평가지표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5점)
측정방법	○ 연간 1인당 평균 국정과제(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대국민 소통·홍보, 4차 산업혁명, 반부패·청렴 등) 교육 이수시간 정량 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측정내용**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대국민 소통·홍보, 4차 산업혁명, 반부패·청렴 등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사이버 포함), 부처 직장교육, 민간위탁 교육, 워크숍 등 ○ **세부 측정기준**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의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4급 이하 현원 = ∑(4급 이하 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4급 이하 현원

구 분	점 수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5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 7시간 미만	3.5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미만	2점
실적없음	0.5점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2020. 12. 31

평가지표	②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6점)
측정방법	○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정량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요소**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및 이용현황 보고여부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연 2회) 등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보다 높게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보다 높게 설정(최소 1%p 이상). 단, 설정한 자율목표치와 상관없이 금년도 유연근무 이용 실적*을 90% 이상 달성한 경우 자율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 ※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자율목표를 전체 23% 이상으로 설정 * 이용실적은 유연근무 유형별 이용실적 합산이 아닌 성별 또는 직급별 이용인원을 합산한 것을 의미 -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 인원 / 총현원*('20.12.31.기준)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간부진 유연근무제 이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보다 높게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최소 1%p 이상). 단, 설정한 자율목표치와 상관없이 금년도 유연근무 이용실적*을 90% 이상 달성한 경우 자율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 ※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자율목표를 전체 23% 이상으로 설정 * 이용실적은 유연근무 유형별 이용실적 합산이 아닌 성별 또는 직급별 이용인원을 합산한 것을 의미 - 4급 이상(복수직급) 간부진의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인원/ 4급 이상 간부진 현원('20.12.31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우수(6점)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통(4점)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흡(2점)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0점)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2020. 12. 31

평가지표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4점)
측정방법	○ 연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정량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측정내용 -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 필수보직기간 준수* 건수/총 전보 건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4호(1년 이상 근무경력) 및 16호(기관장 판단)를 제외한 사유로 사전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준수로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4점 : '20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90% 이상 - 3점 : '20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80% 이상 90% 미만 - 2점 : '20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70% 이상 80% 미만 - 1점 : '20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평가 후 60% 이상 70% 미만 - 0.3점 : '20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50% 이상 60% 미만

평가지표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12점)
측정방법	○ 계획인사교류 비율, 특별추진노력, 인사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수를 합산 하여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를 정량평가 ○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비율, 공모 직위 외부인사(타부처) 응모 여부, 선발심사 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를 합산하여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를 정량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계획인사교류 비율(70점) : 2020년 정원대비 계획인사교류 비율을 구분하여 평가 - 특별추진노력(20점) : 고위공무원 교류, 국과장+담당급 전략교류 실적(* 한 가지 해당 시 10점,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20점) - 인사인센티브 부여(1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인원 / 전체교류인원)×10 * 평가요소(교류직위비율, 특별추진노력, 인센티브부여)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60점~ 80점 미만	40점~ 60점 미만	20점~ 40점 미만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8점	6.5점	5점	3.5점	2점	0점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비율(10점), 공모 직위 외부인사(타부처) 응모 여부(10점),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30점),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50점) (* 공모직위의 인사교류직위는 단계적 만점)

*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절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70점~ 80점 미만	60점~ 70점 미만	50점~ 60점 미만	5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평가지표	⑤ 인사혁신 추진노력 및 성과(5점)
측정방법	○ 각 기관이 추진한 인사혁신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방법** : 인사혁신을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한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등의 사례를 선정, 자체평가위원이 정성평가 ○ **대상사례** : 채용·인재개발 시스템 개선, 공직 전문성 강화, 생산적 문화 조성, 합리적 성과관리, 공직 내 형평성 제고 등 인사제도·운영 개선 관련 대표 우수사례 ※ (예시) 공직 개방성 확대, 특화된 채용시스템 도입, 전문가 인증제도 운영,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 공정한 평가·승진·보상체계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균형인사 확산, 공직 내 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제도·운영 전반의 우수 운영사례

○ **자체평가 위원의 평가기준 :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 총 4개 지표로 평가**

평가지표 (5점))	평 가 내 용
창의성 (1.5점)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 해결에 접근하였는지 평가
	* **(배점기준)** 탁월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0.9점, 매우미흡 0.7점
효과성 (1.5점)	▪ 실질적 업무개선과 조직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효용성이 있었는지 평가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배점기준)** 탁월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0.9점, 매우미흡 0.7점
난이도 (1점)	▪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평가 ▪ 기존 일반적 업무수행에 비해 얼마나 도전적 과제인지 평가
	* **(배점기준)** 탁월 1점, 우수 0.9점, 보통 0.8점, 미흡 0.7점, 매우미흡 0.6점
확산 가능성 (1점)	▪ 해당 사례가 타 기관, 외국으로 확산 가능한지를 평가
	* **(배점기준)** 탁월 1점, 우수 0.9점, 보통 0.8점, 미흡 0.7점, 매우미흡 0.6점

* 2개 이상의 사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각 사례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정

○ **최종 점수산정 방법** : 자체평가 위원 5인(외부) 이상의 평균점수

○ **실적인정기준 및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평가지표	<선택지표> 2개(⑥⑦) 지표중 1개 자율적으로 선택 : 3점

⑥ 상시학습 이수비율

측정방법	○ 4급 이하 현원 중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을 정량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대상**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 **측정내용**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 이하 현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20년 부처별 상시학습 기준시간 ○ **세부 평가기준**

구 분	93% 이상	83%~93% 미만	73%~83% 미만	63%~73% 미만	63%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⑦ 전문직위 지정 비율

측정방법	○ 기관별 전체 직위수 대비 전문직위수의 비율을 정량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측정내용** - 기관별 전문직위수/ 전체 직위수 X 100(본부기준) ※ 전체 직위수 :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개방형/공모직위, 인사교류(파견)직위, <u>전문분야 3~5급 일반직 정원(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부처)</u>을 제외한 총 본부 정원수 ○ **세부 평가기준 :** 기관별 전문직위 지정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본부기준) - 3점 : 본부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7% 이상 - 2.5점 : 전제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5% 이상 17% 미만 - 2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0% 이상 15% 미만 - 1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 이상 10% 미만 - 0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 미만

3. 유능한 디지털정부 구현(20점)

평가지표	①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추진(10점)
측정방법	

가. 정보자원관리수준 측정(3점)

○ '20년 정보자원관리 수준 측정' 결과를 활용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표준등록항목에 따른 '정보자원' 관리 현황을 GEAP 시스템을 통해 점검

* EA 기반의 '2020년 정보자원 관리수준 측정 모델 해설서' 참조

○ (절차 및 일정) '20. 1월 ~ 12월

(총실도 / 품질 측정) 사전 설명회	➡	기관별 정보 등록 점검 · 보완요청· 조치	➡	기관별 측정결과 확정 · 통보
4월		5 ~ 11월		12 월

○ (배점)

구분	90 이상	90~80	80~70	70~60	60~50	50 미만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나.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5점)

○ (대상)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호)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 및 운영 개시 3년이 경과한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 (방법)

- (정보화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계획 수립, 자체점검 결과 등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계획수립, 성과측정, 개선계획 수립 등 범정부EA포털을 통해 등록·관리된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 (절차 및 일정) '20. 1월 ~ 12월

성과관리 수준진단 온라인설명 자료 제공	▶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	성과관리 수준진단 결과 통보	▶	기관별 의견 제출*	▶	성과관리 수준진단 최종결과 확정·통보
행안부, 6월		각급 기관 8월~9월		행안부, 10월		각급 기관, 10월		행안부, 11월

* 기관별 의견 제출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에 한함

평가지표	①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추진(10점)

○ (기준)

-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계획 수립(10점), 성과목표 및 지표의 관리(25점), 종합적인 성과측정 결과 보고·관리(10점), 성과측정 결과의 환류(5점)
-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계획 수립(5점), 성과측정 수행 및 자료 관리(25점), 개선대상 검토 및 개선계획 수립(15점), 후속조치 수행(5점)

○ (배점)

구분	95 이상	95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85 이상	85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점수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다. 중복투자 예방(2점)

○ (대상) '19.9월～'20.8월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중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

○ (방법) 기관별 자체측정 후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측정 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 (절차 및 일정) '20. 1월 ~ 12월

온라인설명 자료제공 (6월)	⇒	자체측정 및 측정 결과점검, 결과 통보 (8월 ~ 10월)	⇒	(필요 시) 이의제기 및 검토, 최종결과 통보 (10~11월)

○ (기준) 사전협의 대상 사업 식별·관리 및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내부규정 관리(20점), 차년도 정보화사업의 예비검토 실시(15점), 당해연도 정보화사업 발주 시 자체 사전검토 및 행안부 사전협의 실시(15점), 자체검토 및 사전협의 결과의 사업계획 반영(20점), 사전협의 절차별 자료 관리(15점), 자체검토 및 행안부 사전협의 결과의 종합적 보고·관리(15점)

○ (배점)

구 분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점수	2.0점	1.5점	1.0점	0.5점	0점

가. 정보자원 관리 수준(3점)

○ 평가 요소

- 정보화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까지 정보자원 현황 등을 GEAP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GEAP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여 평가

평가지표	①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추진(1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 **평가 대상**

- 행정·공공기관의 '20년도 정보화사업, 현행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

>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
> – '정보자원'이란 기관이 보유·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 • 동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

○ **측정 대상**

- EA 표준등록항목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정보자원을 등록*하고 정비한 실적을 '충실도'와 '정합성'을 기준으로 측정

* 정보화사업 계약 체결 시 21일 이내, 정보화사업 완료 시 30일 이내 범정부EA 표준등록항목에 따라 정보자원 및 연관정보를 등록

* 정보누락, 오류 등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기관은 14일 이내 해당항목 정비

영역	측정항목	측정지표	가중치	측정방식	
정보자원 관리 (100점)	정보자원 관리현황 (70점)	EA포털 정보등록 충실도	70%	기간내 보완(대상수) / 등록/정비요청(대상수)	자동
		EA포털 정보등록 품질 정합성	30%	품질정합성 점검기준	수동
	소속/산하기관 정보자원 관리현황 (25점)	EA포털 정보등록 충실도	70%	기간내 보완(대상수) / 등록/정비요청(대상수)	자동
		EA포털 정보등록 품질 정합성	30%	품질정합성 점검기준	수동
	정책 참여 (5점)	현황조사(실태/만족도)	50%	참여여부(Y/N)에 따라 점수 부여	자동
		전자정부수준진단측정	50%		

* '범정부EA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참고

○ **평가 방법**

- Σ 단계별 측정항목 점수 구간에 따라 배점(0~3점)

* 정보자원관리(70점), 소속/산하기관 정보자원관리(25점), 정책참여(5점)

구분	90 이상	90～80	80～70	70～60	60～50	50 미만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평가지표	①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추진(10점)

나.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5점)

○ 평가 요소

- **(정보화사업)** 기관별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수립부터 성과측정, 환류까지 단계별 추진사항을 점검

※ 소속·산하기관 관리수준을 포함하여 측정하되,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출연·위탁하여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함

- **(정보시스템)** 기관별 운영 개시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계획수립, 성과측정,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를 점검

○ 평가 대상

- **(정보화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호)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
- **(정보시스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호)에 따른 운영 개시 3년이 경과한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 평가 방법

- **(정보화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계획 수립, 자체점검 결과 등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계획수립, 성과측정, 개선계획 수립 등 범정부 EA포털을 통해 등록·관리된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측정 매뉴얼 참조

○ 평가 산식

- ∑단계별 점검항목 점수 구간에 따라 배점(0~5점)

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계획 수립(10점), 성과목표 및 지표의 관리(25점), 종합적인 성과측정 결과 보고·관리(10점), 성과측정 결과의 환류(5점)

②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계획 수립(5점), 성과측정 수행 및 자료관리(25점), 개선대상 검토 및 개선계획 수립(15점), 후속조치 수행(5점)

구분	95 이상	95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85 이상	85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점수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평가지표	①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추진(10점)

다. 중복투자 예방(2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연계·통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점검

※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소관부처가 출연·위탁한 정보화사업도 포함하여 점검

○ **평가 대상**

- '19.9월～'20.8월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중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

○ **평가 방법**

- 기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 시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자체 사전검토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한 내역 등을 근거로 평가
- 기관별 자체측정 후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측정 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 **평가 산식**

- ∑단계별 점검항목 점수 구간에 따라 배점(0~2점)

※ 사전협의 대상 사업 식별·관리 및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내부규정 관리(20점), 차년도 정보화사업의 예비검토 실시(15점), 당해연도 정보화사업 발주 시 자체 사전검토 및 행안부 사전협의 실시(15점), 자체검토 및 사전협의 결과의 사업계획 반영(20점), 사전협의 절차별 자료 관리(15점), 자체검토 및 행안부 사전협의 결과의 종합적 보고·관리(15점)

구 분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점수	2.0점	1.5점	1.0점	0.5점	0점

평가지표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6점)

측정방법

가. 웹 품질관리 수준(4점)

○ '20년 "행정·공공기관 웹 품질관리 수준진단" 결과를 활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측정지표 활용

진단항목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개방성	최적화 관리	UI·UX
점수	1	1	1	0.6	0.4

※ 평가 대상 : 대표 웹사이트, 서비스 웹사이트는 평가대상 제외

나.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율(2점)

○ '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완전 제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대국민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실적을 반영

- 기관별 대국민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플러그인 완전제거 여부 (플러그인 제거 유예 제외)

플러그인 완전제거 / 점수	완전제거(100%)	미제거(플러그인 존재)
점수	2	0

측정기준 (착안사항)

가. 웹 품질관리 수준(4점)

○ **평가 요소**

- 웹 호환성, 웹 접근성, UI·UX, 최적화(응답시간, 메인 페이지 용량) 수준진단

○ **평가 대상**

- 기관 대표 웹사이트
- 품질관리 수준진단 항목에 따라 ① 메인페이지, ②목록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③필수제공페이지(팝업, 인트로, 안내창 등) 등에서 7~10개 페이지 선정하여 진단

※ 멀티미디어(동영상, 플래시 등) 및 액티브X 사용여부 등은 웹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 사용자중심 UI·UX 수준 및 최적화 관리

○ **진단결과**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년 행정·공공기관 웹 품질관리 수준진단'의 결과물 이용

○ **평가산식**

· 웹 접근성(1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의 대체텍스트, 자막제공, 키보드사용보장 등 24개 검사항목(100점 만점) 평가

평가지표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6점)

· 웹 호환성(1점)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의 평가지표(100점 만점)인 표준 문법준수 및 호환성(화면, 동작), 비표준기술(액티브X) 사용여부 등을 평가

· 웹 개방성(1점)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검색의 편의성 제공 여부 등을 평가

구분 \ 진단결과	92점 이상	87~92점 미만	82~87점 미만	77~82점 미만	77점 미만
웹 호환성(1점)	1	0.8	0.6	0.4	0.2
웹 접근성(1점)	1	0.8	0.6	0.4	0.2
웹 개방성(1점)	완전개방		차단(완전, 부분)		
	1		0		

· 최적화 관리(0.6점)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에 권고 기준에 따른 웹사이트 응답속도 및 첫 페이지 용량

응답속도(0.3점)	3초 이내	3~5초	5초 이후
	0.3	0.2	0.1
첫페이지 용량(0.3점)	3MB 이내	3~5MB	5MB 초과
	0.3	0.2	0.1

· UI·UX(0.4점)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제5장 품질진단서기준으로 '필수'항목 중 정량적 검사가 가능한 '64개' 항목의 준수여부

구분 \ 진단결과	80%	80~70%	70~60%	60~50%	50% 미만
UI·UX 준수율(0.4점)	0.4	0.3	0.2	0.1	0

나.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율(2점)

○ **평가 요소**

- 웹사이트에 존재하고 있는 플러그인 완전제거 여부

○ **평가 대상**

- 행정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

○ **진단결과**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년 플러그인 제거실적 점검' 결과물 이용

○ **평가산식**

- 웹사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플러그인 제거여부

플러그인 완전제거 여부	완전제거	미제거
점수	2	0

평가지표	③ 디지털정부혁신 우수정책 실적(2점)
측정방법	○ 유능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I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처리방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대민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한 우수사례를 정성평가 * 예시: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활용한 제출서류 감축·자동화, 민원365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활용 등
측정기준 (착안사항)	○ 측정방법 <정성평가> - I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혁신 우수사례 2건(2점)

등 급		우수	보통
배점	사례 1	1.0	0.5
	사례 2	1.0	0.5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평가지표	④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우수정책 실적(2점)
측정방법	○ 유능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 인터넷 기반 서비스(예: 카톡 등)에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PI 방식 등으로 개방한 실적을 정성평가 - 단순 데이터 조회 기능 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 납세고지서 등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함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
측정기준 (착안사항)	○ 측정방법 <정성평가> - 정부가 개방한 AP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우수사례 2건(2점)

등 급		우수	보통
배점	사례 1	1.0	0.5
	사례 2	1.0	0.5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평가지표	① 개인정보 관리수준(4점)
측정방법	○ 평가 산식 -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100점 만점) × 4 / 100 ○ 평가요소 -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관별 기본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및 보호 활동을 중심**으로 지표 구성 (3개 분야 13개 지표)

분야	가중치				13개 지표(25개 항목)	비고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0점)	5		6		1. 개인정보파일 관리(1)	
	4		5		2. 개인정보 관리기반마련(2)	
	5		-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2)	
	8		9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추진(2)	
	8		10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2)	
보호대책 수립 및 운영 (30점)	7	12	9	17	6.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2)	
	5	9	7	13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2)	
	13	-	14	-	8.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2)	
	5	9	-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2)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40점)	10	15	15	25	10.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조치 (2)	
	5	10	10	15	11.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재해·재난대응 절차 수립(2)	
	15	-	15	-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한 이용 및 관리(2)	
	10	15	-	-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2)	

※ 3, 8, 9, 12, 13번 지표 비대상 기관은 해당 지표 가중치를 동일 분야 타 지표에 균등 분배

측정기준 (착안사항)	○ 개인정보관리체계(30), 보호대책수립(30), 침해대책수립(40)에 대한 기관별 실적 평가 후 개인정보보호 부적절 사례(행정처분) 횟수에 따른 감점 등 다양한 가감점을 반영한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협력과)의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4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평가지표	②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점)

측정방법

○ 6개 해당 세부지표별 점수의 합 × 4/100

- SW 개발보안 준수율, 정보보호 인력 전문직위 지정 비율, 사이버보안 교육실적, 웹 취약점 개선·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준수율,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관리 수준

지표	설명
SW 개발보안 준수율 (20)	○ (평가대상) '20년 추진된 SW개발을 포함하는 감리대상 정보화 사업(본부·청 및 소속기관 전체) ※ 총 사업비에서 단순 HW·상용SW 도입 금액을 제외한 SW개발 비용이 5억 이상인 사업 ○ (평가방법) SW 개발보안 적용 명시 및 관련 문서화 확인 ○ (평가산식) 각 점검항목별 점수의 합산

점검항목	점수
대상사업 RFP에 SW 개발보안 적용 명시 여부	5
대상 감리사업 RFP에 SW 개발보안 진단 명시 여부	5
대상사업 완료보고서에 SW 개발보안 적용 상세사항 명시	5
대상 감리사업 완료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 개발보안 점검 및 조치 결과 명시	5
SW 개발보안 의무 적용이 필요한 평가대상 정보화사업 외에 기관 자체사업(과업)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	+5 (가점)

※ 기관 내에 평가대상 정보화사업이 없는 경우, '15점' 일괄 부여

※ '가점'(최대 5점)은 배점(20점) 내에서만 부여

-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해킹, DDoS)' 등은 가점으로 불인정

※ 실적 제출일 기준, 평가대상 정보화사업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

- 중간증적 제출(대상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등에 따른 중간보고서 및 수행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SW개발보안 적용내역, 감리사업의 설계단계 개발보안 점검 및 조치 관련 보고서 등)

지표	설명
정보보호 인력 전문직위 지정 비율 (10)	○ (평가대상) 기관 내 정보보호 담당자(본부·청 기준, 소속기관은 제외) ○ (평가방법) 실적 제출일 기준, 정보보호담당자 중 정보보호 전문직위 지정 비율 확인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포함) 업무 비중이 90% 이상일 경우, 정보보호 담당자로 간주 ○ (평가산식) 지정 비율 구간별 점수 부여

정보보호 인력 전문직위 지정 비율	점수
50% 이상	10점
40% ~ 50% 미만	9점
30% ~ 40% 미만	8점
30% 미만	7점

※ '정보보호 분야'로 채용된 전문/일반임기제의 경우, 전문직위 지정 '0.5명'으로 인정하여 반영

평가지표	②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점)

지표	설명
사이버보안 교육실적 (10)	○ (평가대상) 실적 제출일 기준, 기관 全 직원(본부·청 및 소속기관 전체) * '인사혁신처' 제공 통계연보 또는 각 기관 제출 현원 기준 ○ (평가방법) 기관 소속직원이 정보보호 관련 교육 1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 확인 ○ (평가산식) (교육 이수자(명)/기관 전체 현원(명))×100 교육이수 비율 / 점수 90% 이상 / 10 80% 이상 ~ 90% 미만 / 9 65% 이상 ~ 80% 미만 / 8 50% 이상 ~ 65% 미만 / 7 50% 미만 / 6 ※ (실적 인정교육 기준) 1. 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한 집합교육 또는 정보보호 주관부서가 제작·배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부서에서 실시한 전달교육 2. 기관 내 방송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시청각 교육 3. 외부기관 또는 민간위탁으로 개별수강한 온라인(이러닝) 교육 ※ 사이버보안 = 정보보호의 개념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보호) 모두 주제로 인정 가능(청사, 시설 등 물리적 보안(보호)는 불인정) ※ 2회에 걸쳐 다른 날짜·주제(정보보호)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 합계 1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도 인정

지표	설명
웹 취약점 개선·조치율 (40)	○ (평가대상) 홈페이지, 포털 등 기관 운영 웹 서비스(본부·청 및 소속기관 포함) ○ (평가방법)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항목에 따른 점검 결과, 발견된 보안취약점의 최종 개선·조치 항목 수 ○ (평가산식) 점검결과 발견된 보안취약점 수 대비, 최종 개선· 조치 수의 비율을 산정하여 구간별 점수 부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 정보시스템의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20)와 기관 자체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의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20)를 합산 ※ 구간별 배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웹 서비스와 기관 자체관리 웹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 ○ 참고사항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기관의 모든 웹 서비스가 입주되어 관리되는 경우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확인한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조치결과(20)를 4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

평가지표	②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점)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및 기관 자체관리 웹 서비스가 모두 있는 경우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확인한 웹 취약점 점검·조치결과(20)와 기관 자체에서 수행한 웹 취약점 점검·조치 결과(20)를 합산
3 기관에서 모든 웹 서비스를 자체 관리하는 경우	⇒	▪ 기관 자체에서 수행한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조치결과(20)를 4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

※ 위의 2또는 3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관리 웹 서비스 중 2개에 대해 취약점 점검 및 조치·개선 이행(「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활용)

※ 기관 자체관리 웹 서비스가 1개만 있을 경우, 1개에 대한 평가산식 점수를 ×2로 환산하여 반영

평가산식	웹 취약점 개선·조치율	점수
$\frac{\text{'20.12월말 기준 조치된 취약점 수}}{\text{초기 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수}} \times 100$	95% 이상	20
	80% ~ 95% 미만	16
	65% ~ 80% 미만	12
	50% ~ 65% 미만	8
	50% 미만	4

지 표	설 명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10)	○ (평가대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민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SW(DB, WEB/WAS 등) 관리자 계정*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admin계정(OracleDB < sys, system, WAS < deploy 시 사용하는 계정, 백업SW > 백업스케줄 생성 가능한 계정 등) ○ (평가방법) 시스템별 계정 패스워드 보안관리 점검항목(3개) 준수여부 확인

점검항목	① 초기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②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8자리 이상 설정
	③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평가산식)

평가산식	패스워드 준수율	점수
$\frac{\text{SUM(시스템 계정별 준수항목 수)}}{\text{(시스템 계정 수 × 점검항목 수(3개))}} \times 100$	95% 이상	10
	80% ~ 95% 미만	8
	60% ~ 80% 미만	6
	50% ~ 60% 미만	4
	50% 미만	2

※ 제출한 모든 관리자 계정 수 및 점검주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조합하여 제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자 정보 제출(부서/직위/이름/전화번호/메일주소)

평가지표	②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점)

지표	설명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관리 수준 (10)	○ (평가대상) 기관에서 운영 중인 DBMS, WAS, 웹사이트 등 관리자 페이지 (권한) 및 접속 사용자 ○ (평가기준)

접근권한 관리(5)		점수
담당자 변경, 업무 변동 등에 따른 관리자 권한 회수·삭제 등 주기적 조치	분기별 1회 이상 관리	5
	반기별 1회 관리	3
	관리이력 없음	0
평가점수	(SUM(각 접근권한별 점수))/접근권한 수	

접속기록 점검(5)	점수
①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② 반기 1회 이상 점검 **모두 충족**	5
① 접속기록 6개월 보관, ②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 **하나만 충족**	3
① 접속기록 6개월 보관, ② 반기 1회 이상 점검 **모두 미충족**	0
평가점수	(SUM(각 대민서비스별 점수))/대민서비스 수

※ 제출한 모든 관리자 계정 수 및 점검주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조합하여 제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자 정보 제출(부서/직위/이름/전화번호/메일주소)

측정기준 (착안사항)

○ 6개 해당 세부지표별 점수의 합 × 4/100

- SW 개발보안 준수율, 정보보호 인력 전문직위 지정 비율, 사이버 보안 교육실적, 웹 취약점 개선·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준수율,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관리 수준

○ ‘20.11~12월, 중앙행정기관 44개 부처로부터 세부지표별 자체평가 및 증빙 제출에 따른 점검·분석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 산출 후 통보

평가지표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6점)
측정방법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점) ○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관리, 인적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나. 사이버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점) ○ 사이버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측정기준 (착안사항)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 정보보안 정책 수준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 인적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 사이버 위기관리수준 ○ 전자정보 보안수준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평가지표	④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1점)
측정방법	○ 해킹메일 대응·모의침투·도상훈련 등 국정원 주관 을지연습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 결과 반영
측정기준 (착안사항)	○ 해킹메일 대응 수준 ○ 전산망 모의침투 대응 수준 ○ 사이버위기 대응(도상훈련) 수준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명의 위원(내부 1명)으로 구성(임기 2년 : '21. 3월~'23. 3월)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신규위촉 위원은 종전 **교수위주 구성**에서 탈피, **국책연구원 등 타 직업군 평가 전문가 보강**
- 주기적(2년)으로 위원회를 개편하여 새로운 정책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 및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한 성과업무의 효율화

❍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부문별 소위원회 구성

- 주요정책과제는 업무범위가 포괄적이고, 과제 및 평가지표 수가 많아 원활한 평가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 성과관리 TF 구성·운영 : 성과지표 및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등 검토 및 컨설팅

□ 평가자료 검토방법

❍ (평가지원팀) 자체평가 매뉴얼의 부문별 평가지표의 측정방법에 제시된 평가요소별로 근거 및 증빙자료를 e-IPSES 시스템에 등록

❍ (자체평가 소위원회) 과제설명회,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들간 토론 및 검토

- 자체평가매뉴얼에 따라 위원별 e-IPSES 시스템에서 평정 후 분과 위원장의 추가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자체평가 보고서 등에 대한 최종심의

- 위원 간 평가점수 차이가 크거나, 평가등급경계 과제 및 지표를 중심으로 재평가 등 종합평가심사(총괄위원회) 실시
- 종합평가심사에서는 평가자 의견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

< 평가절차 체계도 >

1 주요정책과제

1 모니터링 강화

-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 평가지원팀으로부터 상반기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과제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7월)

  ※ 전년 자체평가결과, 미흡·부진과제는 당초 부서가 제출한 이행계획을 기준으로 점검 실시

2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담당자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를 e-IPSES 시스템에 입력
- 평가총괄자는 e-IPSES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성과지표의 연도별 추세치, 전년도 평가결과 등을 검토
- 평가담당자는 평가총괄팀에서 요청받은 보완사항을 수정·보완하여 e-IPSES 시스템에 입력
- 평가총괄자는 평가담당자의 수정·보완이 완료되면 입력 마감처리

3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 (1단계) 관리과제 담당자 성과 교육

- 추진실적 작성 방법 및 평가방향, 기준 등 평가매뉴얼 설명 등

❍ (2단계) 지역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기준 등 평가매뉴얼 설명 및 회의

❍ (3단계) 분과 위원에게 평가자료 송부

❍ (4단계) 부서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 평가위원과 과제담당부서 질의 및 응답

❍ (5단계) 계획, 집행, 성과, 효과부문 평가지표 평가(9개)

- (성과관리T/F-외부위원) 성과지표의 적절성, 가점지표 중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충실성'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 계획수립의 적절성, 환류의 충실성, 현장의견 및 관련기관정책협업 노력도, 정책효과성
- (내부평가) 과제 수행 난이도, 관리과제·성과목표 성과달성도*, 가점지표

  * 내부 1차 평가 후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6단계) 분과위원회 개최

- 과제・평가지표별 점수, 평가의견 등 위원 개별 평가결과 취합, 검토

❍ (7단계) 종합평가심사 실시

- 총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위원장, 분과위원장 3명)
- 과제담당 부서의 이의신청 과제에 대한 종합심사
- 위원간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큰 과제 및 평가지표별로 종합검토
- '매우우수'과제, '우수'과제, 순위 및 등급의 '도약'과제 선정

❍ (8단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 심의・의결

4 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

- 평가결과가 개인성과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7개 등급 적용
- 평가결과, 다소미흡 이하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반기별 이행점검 실시

<평가순위에 의한 평가등급 분포>

순위 누적	평가 등급	과제 수	과제 순위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개	'가' 등급
5%초과 ~ 20%이내	우수	5개	'나' 등급
20%초과 ~ 35%이내	다소 우수	5개	'다' 등급
35%초과 ~ 65%이내	보통	10개	'라' 등급
65%초과 ~ 80%이내	다소 미흡	5개	'마' 등급
80%초과 ~ 95%이내	미흡	5개	'바' 등급
95%초과	부진	1개	'사' 등급

5 자체평가 의견수렴

- 평가 전 과정에 대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의 수용성, 평가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평가총괄부서 및 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등

6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자체평가결과보서는 e-IPSES에 의해 실시한 자체평가위원회 총평, 과제별 평정 및 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통계청 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공개
-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보고

2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1 재정사업 평가

❍ 사회적 가치 항목 가점

<table>
<tr><th>착안사항</th><th>사회적 가치 항목 가점</th></tr>
<tr><td>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td><td>
<작성 예시>
ㅇ 붙임1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직접적인 효과 및 기여하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작성
<table>
<tr><th>사회적 가치</th><th>직접적 기여 내용</th></tr>
<tr><td>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붙임1의 사회적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분류 작성)</td><td>‣ 사업의 간접효과는 제외하고 직접효과 만을 기준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작성
‣ 상기 평가지표에서 기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할 것
‣ 아래의 정량적 증빙자료에 대한 간략한 해설 가능</td></tr>
<tr><td colspan="2">정량적 증빙자료(수치 활용)</td></tr>
<tr><td colspan="2">‣ 정량적 수치만 작성하고 해설은 위의 표에서 설명</td></tr>
</table>
</td></tr>
</table>

2 행정관리역량

❍ 전년도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추진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이행실적 모니터링 강화

- 상·하반기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진도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을 포함한 실질적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평가 실시

◇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단계 평가」 실시

① 자체평가위원 검토 및 개별평가

② 소위원회 평가 실시

③ 자체평가위원회 확정

❍ (1단계) 자체평가위원 검토 및 개별평가

- 평가요소별 평정점수 부여

❍ (2단계) 소위원회 평가 실시

- 과제 담당과 설명 및 토의
- 위원 개별 평정에 대한 합의

❍ (3단계) 자체평가위원회 확정

- 재정사업은 별도의 내부 규정에 따름

※ 이외 사항은 「1. 주요정책과제」참조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 관	주요 사항
자체평가 계획 수립	3월말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시행계획 심의.확정 및 국조실 제출(e-IPSES 등록)
소(분과) 위원회 컨설팅	6~7월	자체평가위원회	• 3개 분과별 관련과제 설명 및 컨설팅
상반기 점검	7월	기획재정담당관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7월	자체평가위원회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자체평가 분야별 점검
최종 평가	12월초 ~12월말	과제 부서	• 2020년도 자체평가 실적자료 작성
	'22. 1월	자체평가위원회	• 2020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22.1~3월	자체평가소위원회	• 2020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 - 재정사업
국조실 제출	'22. 1.31.	기획재정담당관	• 자체평가결과 e-IPSES입력
확인.점검	'22.3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 실태점검
	'22.4~5월	기획재정담당관	• 재정사업 환류결과 마련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자체평가결과 활용의 기본원칙 》

- 평가결과의 정책.예산 반영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기반 마련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인사 우대, 성과급, 포상 등 인센티브 연계로 조직역량 강화
- 자체평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피드백 강화로 정책개선 및 성과마인드 확산

	성과보상	정책피드백
인 사	▪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정 반영 ▪ 승진, 포상, 성과급 등 반영	조치계획 수립.시행 상반기 점검 및 심층 컨설팅
조 직	▪ 정원조정.조직개편 ▪ 중기인력운영계획 반영	기능 조정 전문연구회 운영
예 산	▪ 관서경비 차등지원 ▪ 세출예산편성 반영	성과관리계획 보완

평가결과 환류 강화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 계획

□ 정책부문

❍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은 익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책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

- 다소미흡이하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관리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효과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성과를 극대화

- (각 부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추진

- (기획재정담당관) 대표적인 성공·실패사례를 발굴하여 조직 내 전파

※ 평가 후 의견수렴 결과,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학습교재로 활용

□ 예산부문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사업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규모 축소, 중단 등 유도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은 인센티브 예산을 우선 지원

□ 조직부문

❍ 평가결과 상위 그룹에 대해서는 기능·인력보강, 직급상향조정, 소요정원 요구 등을 반영

❍ 평가결과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정밀 조직진단 실시하여 기능 조정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인사부문

❍ 자체평가 결과 우수 관리과제 담당자 BSC 가점 확대

- '우수'과제이상(과제당 2명이내) : 2점 이내, '도약'과제(과제당 2명 이내) : 1.5점이내

⇒ 최종 점수 부여는 성과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신설, 외부 평가 기여자 특별승급 등 청차원의 노력 추진

□ 포상부문

❍ 정부업무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을 실시하여 평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성과주의 문화 확산

- '매우 우수' 부서(100만 * 1개 부서), '우수' 부서(50만 * 6개 부서)
- 평가 순위 및 등급 향상 부서(35(30)만 * 3개부서)

□ 성과급부문

❍ 평가결과를 「한 · 대 · 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 관리 강화

- (과장급) 조직성과의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비율 50% 활용
- (복수직 4급이하) BSC평가결과를 성과연봉(상여금) 지급에 활용

<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직급별 반영비율(2021년 기준) >

직위 (직급)	성과평가					직무수행 능력평가	총점	가감점	종합 조정 (청차장)
	조직성과			개인 성과	성과 기여도				
	국평가	과평가	정평						
국장, 원장	35	-	35	-	5	25	100		±2
과장급	14	28	28	-	5	25	100	-0.5～+1.6	±2
복수직 4급	-	25	25	45	5	-	100	-1～+4	±2
5급	-	25	25	45	5	-	100	-1～+4	-
6급 이하	-	25	25	50	-	-	100	-1～+4	-

4. 평가결과 공유 확산 방안

□ 성과전문 교육 등을 통한 결과 공유 및 확산

❍ 평가결과 및 환류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성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정보 공유 및 토론을 통한 향후 개선방안 의견수렴 및 반영

❍ 제도변경에 따른 평가관련 학습·교육 활성화로 평가체계 정착

- 워크숍,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평가제도, 방법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로 객관적이고 수용도 높은 평가체계 정착

❍ 설명회 등을 통한 자체평가결과 공유 및 확산

- 구체적 성과제고 사례는 공유*하고, 미흡·실패사례는 개선 방안 도출

* 평가결과, **매우우수 과제 1개**를 공유하여 우수성과를 벤치마킹 등 활용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구 분	공개일정	공개방법
평가계획	'21년도 자체평가계획 ('21. 4월)	통계청 홈페이지, 기획재정위(공문 발송)
평가결과	'21년도 자체평가결과 ('22. 2월)	상동

□ 행정사항 등

❍ 기획재정담당관

- '21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 e-IPSES에 등록 : '21. 3. 31.

❍ 전 부서

- '2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 : '21. 7월
- 자체평가위원에게 정책자료 제공 및 정책현장방문 실시 : 연중

참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가중치 현황**

□ 성과목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성과 목표	성과 지표	'21년 목표치	가중치 (%)
Ⅰ. 통계생산기반 개선 및 제도정비로 국가 통계발전을 선도한다.			
1.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가통계 발전을 유도한다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추진 노력도	4.26	100
2. 통계 생산체계 개선으로 통계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통계작성 체계 개선 만족도(점)	3.89	100
Ⅱ. 데이터 허브 및 오픈플랫폼을 통하여 통계 생산 · 활용을 확대한다			
1. 데이터 허브를 통한 통계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통계 생산 패러다임 전환 만족도**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행정자료 이용, 행정자료 활용 신규 통계 개발 및 개선	4.02	100
2. 국민중심의 데이터 개방과 오픈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통계수요에 부응한다	통계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4.11	100
Ⅲ. 통계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1. 경제정책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	경제구조통계이용건수(천건)	3,079	50
	경제동향통계 이용건수 (천건)	2,124	50
2. 사회 및 농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를 제공하여 사회·농어업정책을 지원한다.	사회 · 농어업통계 이용건수(천건)(공통)	5,862	100
Ⅳ. 대내외 협력 · 협업체계강화 및 통계 전문성을 제고한다			
1. 국제통계 협력 및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국제협력 추진실적(점)**	212	100
2.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및 연구를 통해 통계 전문성을 제고한다.	**통계교육 수요기관 만족도**	4.38	100

□ 관리과제 성과지표별 가중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가중치
Ⅰ. 통계생산기반 개선 및 제도정비로 국가 통계발전을 선도한다.				
Ⅰ-1.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가통계 발전을 유도한다.				
	① 국가통계 선도를 위한 통계정책 기반 구축	① 데이터 이용 활성화 노력 만족도(점)	3.70	40
		② 통계데이터 센터 연간 이용건수(건) (공통)	314	60
	② 활용도 높은 국가통계 작성기준 제공	① 신규 행정DB 구축 건수(건)	15	40
	③ 국가통계 활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조정활동 강화	② 기업통계 등록부(SBR) 활용 건수(건)(공통)	66	50
		① 행정통계 이용자 만족도(점)	4.08	50
	④ 고품질 통계 이용을 위한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② 행정통계 이용건수(건)	329,202	60
		① 빅데이터 활용 통계 서비스 건수(건)	13	40
Ⅰ-2. 통계 생산체계 개선으로 통계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①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① 통계조사 정확도 (%)	99.3	50
		② 지역통계 이용건수(만건, 공통)	501.1	50
	② 인구주택총조사 효율적 실시 및 활용도 제고	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KOSIS 이용건수(천건) (공통)	1,933	60
		② 등록센서스협력 서비스 외부이용자 만족도(점)	4.11	40
	③ 모집단의 대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본설계	① 표본설계 협력점수(점) (공통)	29.7	70
		② 표본설계 만족도(점)	4.28	30
	④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강화 지원	①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정도(점) (공통)	92.5	60
		②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점)(공통)	94.1	4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가중치
Ⅱ. 데이터 허브 및 오픈플랫폼을 통한 통계생산·활용을 확대한다				
Ⅱ-1. 데이터 허브를 통한 통계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①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	① 데이터 이용 활성화 노력 만족도(점)	3.70	40
		② 통계데이터 센터 연간 이용건수(건) (공통)	314	60
	②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① 신규 행정DB 구축 건수(건)	15	40
		② 기업통계 등록부(SBR) 활용 건수(건)(공통)	66	60
	③ 수요 변화에 대응한 행정통계 개선·개발	① 행정통계 이용자 만족도(점)	4.08	40
		② 행정통계 이용건수(건)	329,202	60
	④ 빅데이터 구축·활용 및 공유·개방 확대	① 빅데이터 활용 통계 서비스 건수(건)	13	40
		② 빅데이터 활용 통계 이용 건수(건)	147,240	60
	⑤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활성화	① 인가용 MDIS 이용건수(건)	929	50
		②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 이용건수(건)	42,457	50
Ⅱ-2. 국민중심의 데이터 개방과 오픈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통계 수요에 부응한다.				
	① 국가통계서비스 이용 활성화	① KOSIS통계자료 이용 건수(만건) (공통)	4,062	100
	② 표준화된 통계생산시스템 보급으로 통계생산 효율성 강화	① 나라통계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공통)	4.13	60
		② 통계생산 시스템 활용률(%)	51.3	40
	③ 오픈플랫폼 기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①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이용건수(천건)(공통)	6,510	60
		② 오픈플랫폼 연계서비스 건수(건)	109	4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가중치
Ⅲ. 통계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Ⅲ-1. 경제정책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				
	① 활용성 높은 경제통계 작성·개선	① 기업체 통계이용자 만족도(%)	3.89	40
		② 기업체 통계 이용건수(건)	117,680	60
	② 행정자료를 기반한 경제총조사 효율적 실시	① 경제총조사 이용자만족도(점)(공통)	4.02	50
		② 경제총조사 비대면조사율(%)	14.0	50
	③ 지역소득 및 국가자산 통계의 이용자 적합성 제고	① 지역소득, 국가자산 및 무역통계 외부고객 만족도(점)	4.05	40
		② 지역소득, 국가자산 및 무역통계 이용건수(천건)	331	60
	④ 지역·위성계정 통계 개발·개선 및 활용도 제고	① 지역·위성계정 통계 활용 건수(건)	6,023	100
	⑤ 경제·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산업동향통계 개선·개발	① 산업동향통계 외부이용자 만족도(점)	4.35	50
		② 산업동향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567	50
	⑥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동향통계 개선	① 서비스업 동향통계 고객만족도	3.90	40
		② 서비스업 동향통계 이용건수(건)	804	60
	⑦ 소비자물가통계 개선을 통한 이용도 제고	① 물가통계 외부고객 만족도	4.24	40
		② 물가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729	60
Ⅲ-2. 사회 및 농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를 제공하여 사회·농어업정책을 지원한다.				
	① 사회통계 개선·개발을 통한 사회발전정책 지원	① 사회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497	60
		② 사회발전정책 수립 시 사회통계 이용건수(건)	9	40
	② 인구통계 개발·개선을 통한 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① 인구통계 KOSIS 이용건수(천건)	2,652	10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가중치
	③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고용통계 개선·개발	① 고용통계 외부고객 이용자 만족도(점)	4.10	40
		② 고용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건수(건)	24,075	60
	④ 시의성 있는 가계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① 가계동향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공통)	6,888	40
		② 가계동향통계 KOSIS 활용건수(건)	715,261	60
	⑤ 가구의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가계통계 개선	① 가계통계 KOSIS 이용건수(건)(공통)	212,868	50
		② 가계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건수(건)	5,398	50
	⑥ 농산어촌 정책 활용성 강화를 위한 농림어업통계 개선	① 농어업통계 이용자 만족도(외부)(점)	3.91	40
		② 농림어업통계 KOSIS 이용건수(천 건)	856	60
	⑦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한 현장 조사 효율성 제고	① 농어업동향통계 비대면 조사율	44.3	60
		② 농어업동향통계 활용 건수	721,720	40
Ⅳ. 대내외 협력 · 협업체계강화 및 통계 전문성을 제고한다.				
Ⅳ-1. 국제통계 협력 및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① 국제 통계협력 강화	① 통계분야 ODA사업 수원국 만족도(점)	4.15	50
		② 국제통계(북한, 신남방·신북방통계) KOSIS 통계자료 이용건수(건)	151,589	50
	②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통계 신뢰도 제고에 기여	① 홍보만족도 (점)	3.64	100
Ⅳ-2.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및 연구를 통해 통계 전문성을 제고한다.				
	① 통계교육 강화	① 전문교육 현업적용도 (점)(공통)	4.40	50
		② 통계교육 만족도(점)	4.40	50
	②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	① 정책수립 자료제공 실적(공통)	0.65	50
		② 연구성과 실무활용지수(공통)	90.87	50